

인권 상황이 열악하다고 할 때, 그 가장 큰 책임이 해당 정부에 있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북도 예외라 할 수 없다. 그러나 그것이 인권의 악화를 낳게 된 다양한 요인들을 규명하기 위한 노력마저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반세기 가 넘는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전쟁 위협, 그리고 남북 분단체제 등이 북 인권 상황에 미친 영향에 대한 성찰과 변화의 노력은 북 인권 개선에 필수적이다.

우리는, 정치적 의도 속에 너무나 많이 혼탁해져버린 북 인권에 대한 논의가 지금이라도 제자리를 찾기를 바란다. 북 인민들의 기본적 인권과 자유의 향유, 그리고 이를 위해 어떠한 사회적, 국제적 질서가 조성되어야 하는지가 그 논의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이에, 인권운동사랑방은 북 정부와 국제사회에게 다음을 요구한다.

1. 고립과 압박을 통한 인권 개선은 불가능하며, 온전한 인권의 향유는 국내적 노력 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지원과 협력을 통해 성취할 수 있다. 북한사회가 처해 있는 국제적 상황은 전쟁위협과 긴장으로 점철되어 있다. 한 나라의 인권신장을 위해서는 대내외적 평화의 확보가 중차대한 과제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으며, 북의 인권신장을 위해서는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유엔의 노력이 무엇보다도 절실하다. 나아가 유엔은 상호 신뢰 증진에 기반한 전문 협력(technical cooperation) 프로그램을 통해 북이 실질적인 인권 개선을 도모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한다.
2. 국제사회는 북의 열악한 식량권 상황이 다른 기본권 침해로까지 이어지고 있음에 주목하며, 조건 없는 인도적 지원을 통해 북 인민의 생존권 보장을 도모야 할 것이다. 이러한 조치들은 장기적으로 북 인민들의 정치적 자유의 신장을 돕게 될 것이다.
3. 우리는 북 정부가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 및 인권조약기구들과의 대화와 협력 노력을 중단하지 말 것을 요청한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도 인권의 향유를 저해하는 법제와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나가기를 기대한다.
4. 한국 정부는 한반도의 평화, 남북 공동의 인권신장을 위해 어떠한 경로를 밟아야 하며, 국제사회가 어떠한 도움을 주어야 하는지, 우리의 방안과 입장을 유엔무대의 장에서 적극적으로 표명해야 한다. 그것이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해야 할 역할이다.

2004년 4월 16일

인권운동사랑방

<기사 처음으로>

북인권 개선, 고립과 압박으로 미지수

유엔인권위, 북 인권결의안 채택 ... 나라별 특별보고관 등 한층 강화

제60차 유엔 인권위에서 북한인권 결의안이 지난 15일 오후 (제네바 시간) 찬성 29, 반대 8, 기권 16으로 채택되었다. 한국정부는 작년의 불참과 달리 올해에는 기권표를 행사했다. 올해의 결의안 (E/CN.4/2004/L21)은 작년의 표결 결과와 (찬성 28, 반대 10, 기권 14, 불참 1) 큰 차이가 없지만 내용에는 큰 변화가 있다. 올해 채택된 결의안은 북한을 전담하는 국가별 특별보고관 임명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곧 임명될 특별보고관은 내년 유엔 인권위뿐만 아니라 올해 9월 뉴욕에서 개최되는 유엔 총회에도 보고 하도록 되어있다.

예상대로 북한은 미리 준비한 연설에서 '결의안'이 "미국이 이라크 침략구실을 마련하기 위해 조작해낸 모략문건"과 같은 "불순한 정치적 목적을 추구"하고 있기에 "단호히 전면배격한다"고 기존의 입장을 재천명했다. 한국정부는 "2000년 6월 남북 정상회담 이후의 화해협력 분위기"와 "동북아에 평화와 번영의 시대"라는 상황에서 "남북관계의 특수한 사정을 포함한 제반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권한다고 표결전 발언을 통해 설명했다. 한국정부는 이어 "기권이 북한 주민의 인권문제에 대해 방관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해명하면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경제협력사업의 시행을 통해 북한의 심각한 생존권 위협을 완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럽연합을 대표하여 아일랜드정부 대표가 결의안을 상정했고, 표결 전 토론에서 미국과 일본은 찬성을 지지하는 발언을 한 반면 쿠바와 중국은 반대를 촉구하는 발언을 했다. 미국은 북한을 "가장 억압적 정권"이라고 강하게 비난했고 일본은 "남치자 문제에 대한 분명하고 투명한 해결"을 촉구했다. 쿠바는 대북 결의안이 "대화가 아닌 대결을 조장"하는 "이중적 잣대"의 전형이라고 비판했고, 중국은 "자연재난으로 경제난에 처한 북한을 더욱 고립시키는 조처"라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결의안이 채택됨으로써 이제 북한 인권문제는 유엔 인권위의 주요 의제로 자리를 잡았다. 또한 유럽과 미국 및 일본의 유엔을 통한 대북 정치적 압력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그러나 결의안에 따른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 제도가 북한 인권 개선에 어떤 긍정적 기여를 할지 현재로서는 미지수이다. 두 진영 사이에 불신의 벽이 높고 인권을 바라보는 관점 또한 너무나 다르기 때문이다.

<기사 처음으로>

을 인권영화제에서 상영하는 '갇힌 이들의 이야기'

을 인권영화제의 상영작에선 한 명의 특이한 인물을 만날 수 있다. 인권활동가나 피해자도 아니며 우리에게 감동을 선사했던 혁명가도 아니다. 그는 세상 사람들 모두에게 무시당하고 있는 잡범, 바로 '범죄자'이다. 미국 흑인 하층민 소년들의 성장과정을 세밀히 기록한 다큐멘터리 <후프 드림>으로 주목받았던 작가 스티브 제임스의 최근작 <스티비>의 주인공 스티비가 그이다.

감독은 십여 년 전 보호시설에 있던 십대 소년 스티비와 후견인의 인연을 맺은 적이 있었다. 부모로부터 버림받고 새 할머니에게 길러졌던 스티비. 감독이 찾은 그는 30세 초반에 이미 '실패한 인생'이었다. 변변한 직업도 없이 감옥을 드나들며 술과 마리화나에 절여 살고 있는 그는 설상가상으로 조카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 중에 있다. 감독은 나락으로 떨어진 스티비를 일으켜 세우거나 비난하지도 않는다. 무모하리만큼 잔잔히 카메라를 돌리대며 "그는 누구이며, 누가 그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는가"라고 묻고 있다. 스티비에 대한 감독의 무기력이나 부채감은 사회의 무능력으로 고스란히 치환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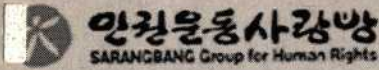
소년수들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 한 편도 이번 영화제에서 만날 수 있다. 일탈과 방황이 주를 이루는 소년수들은 예방 교화라는 차원으로 '소년원'에 수감된다. 하지만 소년원 역시 감옥과 다를 바 없는 '구금시설'이다. 감독은 미사를 중심으로 한 소년원의 일상을 통해 '소년수 교정'의 음지와 양지를 고루 보여준다. 라트비아의 노장 다큐멘터리 스트 헤르츠 프랑크의 1975년 작품이다.

니카라과의 가장 큰 교도소 라 모델라. 감독은 재소자들과 함께 비디오 제작 워크숍을 시작한다. 대부분 갇힌 채 연루되어 살인을 저지른 이들은 평생을 감옥 바깥에 발을 내딛을 수 없는 중형을 선고받은 사람들. 카메라를 든 재소자들은 끔찍한 형벌 공간, 동료재소자, 그리고 자신의 모습을 찍으면서 이중의 고통을 겪는다. 좌절하고 그만두는 이가 있는가 하면, 이들의 억눌린 분노가 표출되어 제작시간엔 교성이 오가기 일췌이다. 한 번 정해진 형기는 개인의 속죄와는 상관없이 가혹하게 적용되는 것을 보여주는 이 작품은 이른바 "응보형의 형벌이 교화와 무슨 상관인가?"라는 질문을 그치지 않게 한다.

<기사 처음으로>

제보 및 의견 | 어제의 인권하루소식 | 인권하루소식 검색

위로



인권교육 | 인권정보자료 | 인권하루소식 | 인권기획활동 | 인권영화제 | 감옥인권 | 인권운동연구소

인권하루소식

일간(2면발행, 일·월요일 제외)

창간 1993년 9월 7일

인권하루소식

2004년 04월 20일 (화)
제 2555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김영원 김정아

TEL 02-741-5363 | FAX 02-741-5364
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오 권 하 루 소 식
하 소 식 자 세 히 찾 기
하 루 소 식 주 제 별 찾 기
만 화 사 랑 방

<오늘의 기사 제목>

1. '모내기' 공안비평은 표현의 자유 침해
2. '주민등록증을 찢어라' 2년 만에 방영 결정
3. ㉠ 유익선의 인권이야기 ㉡ 한 소녀의 죽음과 빈곤
4. 주간인권호를 (2004년 4월 12일 ~ 2004년 4월 19일)
5. [알림] 인권이야기 필진 교체

'모내기' 공안비평은 표현의 자유 침해

유엔 자유권위원회, 그림반환·유죄판결 무효화·보상 등 권고

유엔 자유권위원회(인권이사회)는 그림 '모내기'의 작가 신학철 씨에 대한 국가보안법 적용이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통보해왔다. 이로써 국제인권기준에 도 부합하지 않은 국가보안법의 반인권성이 다시금 확인됐다.

자유권위원회는 신 씨에 대한 국가보안법 유죄판결이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아래 자유권규약)' 제19조 2항 '표현의 자유'에 위반한다며 지난 10일 한국 정부에게 유죄판결의 무효화, 유죄판결에 대한 보상, 그림의 원상복구 및 반환 등 구체적 조치를 취하라고 밝혔다. 신 씨는 87년 그림 '모내기'로 국가보안법 7조(이적표현물 제작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 2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99년 대법원은 "표현이 적극적이고 공격적"이라며 서울지법 본원 합의부로 환송해 같은 해 정역 10월형의 선고유예 및 그림의 몰수를 선고했다.

신 씨의 작품 '모내기'는 가로 130Cm, 세로 160Cm 크기의 유화이다. 대법원 판결문 묘사에 따르면 그림 하반부는 농부가 황소를 이용하여 썰레질을 하면서 미·일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탑보, 사무라이 등을 남해바다로 쓸어버리고 있으며, 상반부는 백두산이 그려져 있고 농민들이 무리익은 오곡과 풍년을 경축하며 둘러앉아 춤을 추며 노는 장면이 그려져 있다. 대법원은 그림 상반부는 평화롭고 풍요로운 광경을 그려 북한을 찬양했고, 하반부는 남한을 그린 것으로 통일을 저해하는 제국주의 등을 몰아내고 피지배계급이 혁명을 일으키자는 북한 공산집단의 주장에 동조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신 씨의 주장은 다르다. 신 씨는 "모내기하는 순서를 단계적으로 표현했다. 통일을 하기 위해 반통일 요소를 썰레질하는 것을 아래에 그렸고, 가을이 되어 풍년을 맞이하는 풍경을 그림의 위에 배치했을 뿐"이라며 "통일의 염원을 그린 것인데, 검찰이 냉전적 시각으로 해석해 공안비평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자유권위원회 권고에 대해 법무부 인권과 김현철 과장은 "현재 논의중이고, 두 군데 의견조화를 요청한 상태로 정해진 방침은 없다"며 "5월중으로 조치내용을 외교부를 통해 유엔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의 대리인 조용환 변호사는 "권고를 받아들이는 방식이나 절차에서 국내법과 충돌하는 등 기술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정부가 해법을 찾아 권고를 받아 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신 씨는 권고에 대해 "고맙고, 기분이 좋다"면서도 "전례를 비춰볼 때 정부가 받아들일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로 국가보안법과 관련하여 자유권규약에 따른 개인 청원(통보)절차를 활용하여 표현의 자유 결정을 받아낸 사례는 1998년 박태훈 씨, 같은 해 김근태 씨 등 몇 차례 있어 왔다. 또한 자유권규약 국가보고서 심의 때마다 국가보안법 폐지 및 개정 권고는 되풀이되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이번이 이를 무시했다.

자유권위원회는 의견서에서 한국정부에게 향후 유사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국가보안법이 존립하는 한 유사한 침해가 계속될 수밖에 없다. 민변 김선수 변호사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하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권고의 의미를 지적했다.

<기사 처음으로>

'주민등록증을 찢어라' 2년 만에 방영 결정

재심 끝에 KBS<열린채널>에서 방송기로

드디어 공영방송을 통해 다큐멘터리 '주민등록증을 찢어라(감독 이마리오)'를 볼 수 있게 됐다. 16일 KBS <열린채널>은 '시청자 참여프로그램 운영협의회(아래 협의회)'를 거쳐 '주민등록증을 찢어라(아래 주민증)'를 방영토록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열린채널>의 방송여부를 결정하는 '협의회'는 지난 2002년 4월, '주민증에 대해 ~ 찢어라'라는 제목과 '박정희 대통령 생가 장면'을 문제삼아 방송불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특히 '박대통령 생가 장면'에서 명예훼손의 문제가 있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방송불가 결정이 내려지자 공영방송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열린채널>이 사회적으로 민감한 주제를 회피하는 것 아니냐는 비난이 있었다.

'주민증'의 이마리오 감독(서울영상집단)은 지난 1월 협의회에 재심을 청구해 2년 만에 방송 결정을 얻어냈다. 이 감독은 "늦게나마 협의회가 방영 결정을 한 것은 다행이지만, 벌써 2년이니 됐다"며 협의회의 뒤늦은 결정에 아쉬움을 전했다. 이 감독은 "'주민등록증을 찢어라'에서 전하고자 하는 상황이나 사건은 하나도 변한 게 없다"며 문제 삼고 있는 지문날인제도가 바뀌지 않은 현실을 다시 한 번 지적했다.

<기사 처음으로>

○ 유의선의 인권이야기 ○ 한 소녀의 죽음과 빈곤

한 소녀가 생계를 비판하여 자살했다. 거리에서 객사한 아버지와 이름도 제대로 알 수 없는 병으로 이병원 저병원을 떠돌다가 아예 치료를 포기한 어머니, 그리고 어린 두 동생과 살았던 그녀는 '하고 싶은 것은 많으나 어떠한 희망도 없다'며 유서를 남겼다. 이 열 여섯 살 소녀의 죽음과 그녀의 가족은 우리사회 빈곤문제를 적나라하게 드러내 보이고 있다. 노숙으로 인한 죽음, 4천 만원이 넘는 빚, 치료조차 받지 못하는 의료의 문제, 교육의 문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권의 문제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

그녀의 유서처럼 어떠한 미래도 꿈꿀 수 없는 상황이 현재 우리사회의 모습이다. 그녀 이외에도 3월에만 수많은 이들이 생계를 비판하여 목숨을 끊었다. 대부분은 신용불량 문제와 실업으로 인한 고통으로 자살한 가장들이었다. 이들의 죽음은 개인의 무능력이나 나약함 때문이 아니기에 우리는 이 죽음을 '사회적 타살'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렇다면 단지 복지제도나 대책의 부족이 이들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일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 가구였던 소녀의 가족은 한 달에 79만의 현금급여와 교육비를 지급 받고 있었다. 그녀는 '고등학교 입학금도 없다'고 썼지만, 엄밀히 따지면 수급자 가구 자녀의 입학금과 수업료는 모두 지급되고 있었다. 정부도 안타까운 일이나 제도상으로는 제공할 수 있는 것을 제공했다는 입장이다. 빈곤을 하나 하나의 현상과 이와 관련된 제도만의 문제로 국한시켜 버리기엔 그녀의 절망은 더욱 깊었던 것 같다. 많은 빈곤가정들의 공통적인 문제는 교육비의 부족보다 교육받아서 무얼하겠냐는 절망감이며, 폭력과 무관심 속에서의 가족의 파괴와 삶의 곳곳에서 소외되어 존재감마저 상실하게 된 상황이다.

'사회적 인간'으로서의 존재감을 찾기 어려운 상황, 이를 벗어날 수 있는 어떠한 희망도 부재한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나는 소녀의 죽음을 통해 대량실업시기의 또 다른 죽음을 떠올렸다. 2000년 3월 즈음, 동대문야구장 공중전화 부스 옆 쓰레기 더미에 덮여 있던 한 노숙자가 죽은 채 발견되었다. 보름 동안 쓰레기더미에 방치되었던 주검의 얼굴과 살점은 쥐들이 갉아먹어 대부분 뜯겨 나간 상태였다. 중3 소녀의 죽음과 노숙인의 죽음이 연결되어 떠오른 것은, 죽음으로 내몰리고 외면되고 방치되는 야만적인 상황에 대한 동일함 때문일 것이다.

생계형 자살이 잇달아 일어나는 상황 속에서도 정부는 의도적인 외면과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빈곤의 심각성을 인정하면서도, '경제의 어려움'을 강조하며 처참하게 죽어가고 있는 이들의 문제를 외면하는 상황은 이미 이들을 '국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음을 반증한다. 철저하게 가난한 이들을 배제하는 구조 속에서 어떠한 제도도 이들에게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되찾게 할 수는 없다.

도시에서만 하루에 3명 꼴로 생계형 자살이 이어지는 극단적인 상황을 '무능력'의 문제로 치부하며 자본의 구조가 낡은 폭력의 참혹함을 참혹함으로 느끼지조차 못하는 사회.

매월 20일은 수급권자에게 생계급여가 지급되는 날이다. 4인 가구 평균 30만원도 안 되는 금액을 '권리'로 받아든 이들은 또 어떤 생각을 할까.

◎유의선 님은 빈곤해결을 위한 사회연대(준) 사무국장입니다.

<기사 처음으로>

주간인권흐름 (2004년 4월 12일 ~ 2004년 4월 19일)

1. 420을 장애 차별 철폐의 날로!

420장애인차별철폐투쟁공동기획단, 서울역 부근의 육교 아래 도로 집거 '장애인 차별 철폐' 주장...참가자 35명 경찰서로 전원연행(4.13)/ 420장애인차별철폐투쟁공동기획단, 장애인차별 철폐를 위한 정책요구안 발표...장애인차별금지법 및 장애인연금법 제정, 장애인 노동권·이동권·교육권 확보,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및 기초생활 보장 등(4.19)

2. 주둔군 안절부절, 군대 철수 눈치 살펴

이라크 저항단체, 인질협박...주둔군 향해 이라크 철수 촉구 계속 돼(4.12)/ 이라크 시아파, 나자프 등 3개 도시에서 철수...미군, 나자프 포위 압박/ 이라크 저항단체, 이탈리아인 4명 납치...이탈리아에 철군 요구(4.13)/ 이탈리아 정부, 인질협박에도 철군 거부...이라크 저항단체, 이탈리아인 1명 살해/ 일본인 인질 3명은 석방(4.15)

3. 복인권 개선하려면 정치적 의도 배제해야

좋은벗들, 민변 등 인권단체 미 의회에 '북한인권법안·북한자유법안은 한반도 평화와 복인권 개선에 부정적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의견서 발송(4.14)/ 60차 유엔 인권위, 북한 전담 특별보고관 임명을 포함한 '북한결의안' 채택...북한 강력 반발/ 한국정부 '남북관계를 고려해 기권'하며, "인도적 지원 등 북한 인권의 실질적 개선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혀(4.15)/ 인권운동사랑방, '고립과 압박을 통한 복 인권 개선은 불가능하다'며 국제사회와 유엔의 인도적 지원 및 북과 한국정부의 노력 촉구(4.16)

4. 기타

교육인적자원부, 학생 상담 및 학교·가정폭력 전문 상담을 위해 학교에 사회복지사 배치 계획 밝혀(4.11)/ 매향리주민대책위,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등 4개 단체, 매향리 소송피해의 배상금 분담을 거부한 주한미군에 항의(4.12)/ 21세기 청소년공동체 희망 등 청소년단체, 강제 자율보충학습과 0교시, -1교시 감시 및 인터넷 신고접수 받겠다고 나서/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4부, 시그네텍스 여성 노동자 36명이 '일방적 공장이 전에 반대하다 부당 해고 당했다'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채심판 정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4.16)

<기사 처음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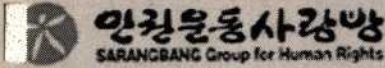
[알림] 인권이야기 필진 교체

<인권이야기>가 오늘부터 새로운 필자들과 함께 찾아갑니다.
유익선(빈곤해결을위한사회연대(준) 사무국장), 최혜정(한겨레21 기자)
김중서(배재대 법학교수), 유혜정(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기사 처음으로>

제보 및 의견 | 어제의 인권하루소식 | 인권하루소식 검색

위로



인권교육 | 인권정보자료 | 인권하루소식 | 인권기획활동 | 인권영화제 | 감옥안면 | 인권운동연구소

인권하루소식

일간(2면발행, 일·월요일 제외)

창간 1993년 9월 7일

인권하루소식

2004년 04월 21일 (수)
제 2556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김영원 김정아

TEL 02-741-5363 | FAX 02-741-5364
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오 의 하루소식
하 소식 자세히 찾기
하루소식 주제별 찾기
만화 사랑방

<오늘의 기사 제목>

1.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고요함'
2. 우리는 투명인간이 아니다
3. '유전자 디비'로 미아찾기, 논란 속 경찰 시행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고요함'

인권사회단체, 개악 집시법 소음규제 시행령 안 문제제기

개정 집시법의 소음규제 시행령 입법예고안을 둘러싸고 과도한 기본권 침해라는 우려와 문제제기가 일고 있다.

개악집시법대응연석회의는 20일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0일 약 700명이 참석한 세종문화회관 앞 집회에서 조사한 소음 측정치를 발표했다. 원진직업병관리재단부설 노동환경건강연구소는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인 세종문화회관의 외벽에서 소음을 측정 한 결과, 집회가 시작하기 이전에 이미 74-77데시벨로 나타났고 집회 시간의 평균 소음은 87데시벨이었다고 밝혔다. 이로써 시행령안이 규정하는 주간 80데시벨, 야간 70데시벨 규제기준으로는 사실상 집회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드러난 셈이다. 연석회의는 집회 시위의 소음은 단시간,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불편이지만, 이를 규제하게 되면 헌법이 보장하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표현의 자유를 희생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날 오후 경찰청은 한국경제신문사에서 '집회시 합리적 소음기준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임준태 교수(경찰행정학)는 "집회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상당히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며 "소음이 일반인에게는 고문과 같아 시행령안의 느슨한 기준은 별 실익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오히려 기준을 더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임 교수는 일본의 사례를 통해 "집회시위를 규율하는 법이 없지만, 활성기의 소음을 규제할 목적으로 동경도에서 독자적인 자치조례를 마련하여 운용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오동석 교수(아주대 법학)는 "일본의 조례는 상업적 활성기 사용 등 소음의 일반적 규제"라며 "조례 1조에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세차례에 걸쳐 강조하고 있다"고 받아쳤다. 민주노동법률원 권두섭 변호사도 "집회라는 것이 다수의 군중이 모여 의사를 표시하고 소통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소음이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헌법이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는 순간 이미 소음발생 등은 우리 사회가 용인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와 시민들이 소음으로부터 자유로운 쾌적한 환경을 누릴 권리가 침해하게 대처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경비1과 김호철 씨는 "선량한 다수 시민의 인권을 위해서 소음 규제안을 입법하는 것"이라며 "집회 참가자는 역사사지로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민가협 서경순 운영위원은 오히려 역사사지로 생각하라며 "집회는 막다른 골목에 다친 사람이 생존권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집회시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인권운동사랑방 박래군 활동가는 "예외적인 상황에 대하여 단일한 일반기준을 만들어 형사 처벌하는 것은 과도한 기본권 침해"라며 "법률적 처벌이 아닌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 처음으로>

우리는 투명인간이 아니다

4. 20 맞아 장애인차별철폐투쟁결의대회 개최

"전에 장애인의 날 행사에 학교에서 단체로 '동원'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행사들이 장애인을 위한 행사라는 생각이 안 들었어요"라며 유기용 씨는 수줍게 웃으며 말했다.

다. 그러면서 "장애인차별철폐의 날 행사에 매년 참가했는데, 내 문제를 내 목소리로 직접 이야기할 수 있어서 좋고, 갈수록 장애인 참가자가 많아져 기분도 좋네요"라고 말하며, 따스한 봄 햇살에 해맑은 표정을 지었다. 전통휠체어에 몸을 의지한 유 씨는 자신은 "활동가는 아니"라며 그저 '장애인가운전권확보를 위한 사람들의 모임'에 있다고 했다.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장애인의 인간답게 살 권리를 주장하는 이들이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장애인차별철폐의 날'로 규정하고 독자적으로 행사를 해온 지 3년이 됐다. 올 장애인차별철폐의 날을 준비한 '420장애인차별철폐투쟁공동기획단(아래 공동기획단)'은 '정부가 수많은 장애인들을 동원해 '장애극복상'을 수여하고 워안 잔치를 베푸는 장애인 날'이 오히려 '장애인을 차별하는 자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사랑과 봉사의 이름으로 장애인을 차별하는 사회구조를 강화시킨다'며 "장애인을 대상화하는 정부 행사를 거부한다"고 밝혔다.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진행된 420장애인차별철폐투쟁결의대회에 참가한 장애여성공감 박영희 공동대표는 장애인 차별 철폐 투쟁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때가 "고속철도를 타기 위해 여러 장애인들과 함께 서울역에 갔을 때"라고 말했다. "경찰의 물리적인 폭력은 오히려 참을만 하지만, '(장애인이) 왜 여기 와서 이러느냐'는 역무원의 차별적인 말 한 마디가 그 어떤 차별보다 힘들게 했다"고 답답히 말했다. 장애인에게 이동권은 여전히 '먼 나라 이야기'일 뿐이다. 생존권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장애인으로서 휠체어에 몸을 싣고 1500Km 국토종단을 하고 있는 장애인연금법제정공동대책위원회 류홍주 공동대표는 "10% 정도의 장애인만 한달에 30만원 가량의 정부지원금을 받고 있고 나머지 90%의 장애인은 시설이나 방 안에 갇혀 살고 있다"며 "장애인의 생존권을 찾기 위해 장애인연금법 제정을 전국적으로 알리고 있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투쟁결의문을 낭독한 문명동 노동장애인야학 총학생회장은 지체장애 1급의 장애인이었다. 문 씨는 "이동 수단이 없어서 배우지도 못하고 사람을 만날 수조차 없었던 고통과 소외를 한번이라도 경험해 보았는가?"라고 되묻고 "우리의 권리가 보장되는 그날까지 우리의 투쟁은 끝까지 계속될 것"이라며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의 차별철폐의 마음을 담아 소리 높여 외쳤다.

<기사 처음으로>

'유전자 디비'로 미아찾기, 논란 속 경찰 시행

인권사회단체, "법적 근거 없다"고 우려

전국 보호시설에 수용 중인 아동과 미아 부모를 대상으로 DNA를 채취한 후 유전자물 데이터베이스(아래 디비)로 구축하는 미아찾기 사업이 경찰에 의해 시행된다. 시료 채취를 위한 작업이 21일부터 집행됨에 따라 미아찾기 유전자 디비 구축을 위한 작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

이에 20일 진보네트워크,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 등 14개 인권사회단체들은 성명과 의견서를 통해 '미아찾기라는 인도적 측면을 충분히 인정하지만 인권침해 소지가 있어 신중을 촉구한다'면서 "유전자 디비 구축사업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우려하고 "미아와 부모에 대한 DNA 수집 근거, 분석, 이용, 보관, DNA구축, 유전정보 보호 등에 대한 것들이 법률에 기초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찰청은 이러한 우려에 대해 미아찾기 사업의 정당성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기술적 우수성을 내세우고 있지만 인권사회단체는 "그 동안 부당하게 지문을 채취·공유하고 용의자들을 대상으로 DNA를 채취·관리해온 경찰의 관행을 볼 때, 경찰이 법적 근거 없이 디비화된 유전 정보를 남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할 만한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또 이 사업이 지난 2001년부터 사회적으로 논란이 돼왔음에도 정부가 이 문제를 공론화 하여 관련 법률을 정비하는 등 세밀하게 준비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경찰청이 이 사업을 일부 장기미아에 한정해 실시할 것이라면 유전자 디비를 확장하지 않겠다고 명확히 선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2002년 행정자치위원회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경찰이 집계한 미아신고 접수 현황은 1999년 3천321건, 2000년 4천48건이다. 이중 1999년의 경우 3천208건이, 2000년의 경우 3천798건이 보호자에게 인계되어, 인계율이 96.6%, 93.8%로 집계됐다. 그러나 보호자에게 인계되지 못한 나머지 미아들은 통상 '장기미아'로 불려지는데 '전국미아·실종가족찾기 시민의 모임' 나주봉 회장에 따르면 누적된 장기미아는 대략 13만에서 20만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그 동안 아이를 잃어버린 가족들의 노력으로 최근 경찰이 초동수사 단계에서 대응력이 높아져 이전보다는 인계율이 높아졌다고 한다.

그렇다면 최소 6개월에서 길게는 10년 이상 된 장기미아의 경우, 이들이 부모와 상봉할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나주봉 회장은 "장기미아의 경우, 과거 경찰의 초동수사가 미흡해서 자료도 남아있지 않고, 아무리 부모라도 아이들이 의도, 체형 등이 변해서 자식인지 확인할 길이 없다"며 "장기미아를 찾기 위해서는 유전자 디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관계법령의 부재가 미아와 부모에 대한 인권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인권사회단체들의 지적에 대해 "시간적 여유가 없다. 그 동안 미아찾기 관계법령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으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전국미아·실종가족찾기 시민의 모임은 유전자 디비 외 장기미아를 찾기 위해 전국적으로 신고·미신고복지시설(조건부 복지신고시설 포함)을 망라한 무연고 아동카드를

인터넷(미아찾기전국종합시스템)에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해왔다. 현재 보건복지부 위탁으로 한국복지재단이 '어린이 찾아주기 종합센터'를 운영, 미아에 대한 신상정보(성별, 성명, 사진 등)를 기초로 보호시설에 인계되거나 미아로 신고된 아동을 찾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상태(5만7천620명 대비화 2003년 9월 기준). 그러나 미신고복지시설에 있는 아동은 정부의 관리감독이 부재하여 기초적인 신상정보조차 관리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나주봉 씨는 "인가복지시설의 경우에도 보호아동에 대해 인적사항이 담긴 아동카드를 작성해서 '어린이 찾아주기 종합센터'로 보내는 일이 권고사항"이라고 말한다. 강제사항이 아니다 보니 지금 구축되어 있는 '어린이 찾아주기 종합센터'에서는 모든 미아를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정부는 신고시설이나 미신고복지시설에 있는 무연고 아동에 대한 현황 자료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인권운동사랑방 강성준 씨는 "당장이라도 정부가 미신고복지시설에 가서 아동 인적사항을 파악하여 기본적인 신원파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개 미신고복지시설의 경우 시설생활자들의 명단 작성 및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는 점이 공통의 문제로 지적돼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아를 찾기 위해 부모가 생업을 전폐하고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는 신고·미신고복지시설을 찾아다니는 수밖에 없다. 따라서 근본적으로 신고·미신고복지시설들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을 강화해서 최소한 시설생활자 명단이라도 주기적으로 작성·관리할 수 있게 강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재(04년 1월 기준) 전국적으로 아동관련 미신고복지시설은 134개이며 1천767명의 시설생활 아동이 존재한다.

지난 2001년 '유전정보 이용에 관한 시민배심원제 정책권고(안)'을 보면, 배심원들은 유전정보를 이용한 미아찾기의 대의는 인정하나, 이러한 정책이 미아 찾기 사업에 최우선으로 시행되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표명한 바 있다. 배심원들은 미아발생에 대한 예방적 노력과 시설의 관리감독이 매우 열악한 상황임을 감안할 때 유전자 디비 도입이 최우선 과제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지금 우리가 짚어야 할 것은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기반한 미아찾기 시스템의 문제점과 대안이며, 그 과정에서 유전자 디비 구축의 문제가 논의되어야 한다.

<기사 처음으로>

제보 및 의견 | 어제의 인권하루소식 | 인권하루소식 검색

위로



인권교육 | 인권정보자료 | 인권하루소식 | 인권기획활동 | 인권영화제 | 감옥인권 | 인권운동연구소

인권하루소식

일간(2면발행, 일·월요일 제외)

창간 1993년 9월 7일

인권하루소식

2004년 04월 22일 (목)
제 2557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김영원 김정아

TEL 02-741-5363 | FAX 02-741-5364
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오늘의 하루소식
하 소식 자세히 찾기
하 소식 주제별 찾기
만화 사랑방

<오늘의 기사 제목>

1. '변호인 참여' 허용이 아닌 원칙으로
2. 조례로 광장에 '달걀기'
3. [알림] 2004 전국정보운동포럼 - 정보인권과 프라이버시 -

'변호인 참여' 허용이 아닌 원칙으로

<기획>형사소송법 개정 이렇게 ① 수사기관의 신문 조사에서 변호인 참여

[편집자주] 지난해부터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 중인 법무부는 공청회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7월 경 개정안을 입법예고 할 계획에 있다. 형사소송법 개정을 앞두고 그 동안 체포, 수사, 구금 등의 과정에서 인권침해로 지적돼 왔던 문제를 짚고 개정 방향을 살펴보는 기획을 여섯 차례에 걸쳐 실는다.

'수사기관에서의 신문 조사'는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는 원초적인 부담 외에 그 자체가 위협적이고 불유쾌한 경험이다. 경찰이나 검찰과 대면하는 '조사과정'에서, 혐의를 받고 있는 '나'는 (설령 죄가 없더라도) 도무지 이들 경찰이나 검찰과 대등한 입장이 되지 못한다. 범죄 혐의는 법정에서 다룰 일이고, 신문 조사하는 과정에서 '나'는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을 권리' '기타 권리를 고지 받을 권리' 등을 가지고 조사당사자와 동등한 입장에 설 수 있어야 함에도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조사하는 측과 피의자의 대등한 권리(무기대등의 원칙)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변호사의 신문 조사 참여'가 필수적이다.

'지침'은 말일 뿐, '관행'은 여전

검찰은 현행 형사소송법에 '수사에 변호인 참여' 규정이 없는 것을 이유로 그동안 조사 과정에 변호인 참여를 불허해 왔고, 이에 대해 인권·사회 단체를 비롯해 학계, 법률가 측에서는 검찰의 제한이 헌법 12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침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는 지난해 송두율 교수의 '구속과 수사'를 통해 다시 한 번 이슈가 됐다. 변호인 참여를 불허하는 검찰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송 교수 변호인단의 주장을 대법원이 받아들여, 신문 조사에 참여하게 됐다. 당시 대법원(2003도402)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로 피의자 신문 조사에서 변호인의 참여를 인정하며, 단 '신문을 방해하거나 수사 기밀을 누설하는 등의 염려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할 때'에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송 교수의 변호를 맡았던 송호창 변호사는 "대법원의 결정은 변호인의 참여만을 인정한 것일 뿐이고, 변호인의 행동과 역할을 규정하는 구체적인 법률이 없기 때문에 대검내규에 따라 변호인의 참여 방식이 극히 제한됐다"고 말했다. 실제 송 교수 신문 조사에서 변호인은 멀찌감치 출입문 쪽에 떨어져 앉아 지켜봐야 했다. 이러한 변호인 신문 조사 참여에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동등한 입장에 선다'는 그 본래의 의미를 충족시킬 수 없음이다.

'참여' 규정인지, '제한' 규정인지 헷갈려

법무부는 지난 2003년 '인권보호수사준칙'이나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운영지침'을 통해 변호인의 신문 참여를 보장하겠다고 했지만, 송 교수 사건에서도 보여지듯 이러한 지침은 권리 보장에 실질적 효과를 가져오지 못했다. 이에 '변호인의 신문 조사 참여'는 법률로 규정돼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법무부도 지난해부터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준비하면서 변호인의 피의자 신문 참여를 신설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개정안을 담당하는 이흥탁 검사는 "증거조각, 피해자와 관련자의 재산 등에 해를 가할 염려가 있는 경우, 신문방해 등이 아닌 이상 변호인의 참여를 허용하는 쪽으로 입법예고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지난해 법 개정 초안에 포함돼 비난을 받은 '48시간 동안의 변호인 참여 제한'이라든지 '신문에 개입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은 개정안에 넣지 않기로 했다는 것.

그러나 제한규정에 포함된 '신문 방해'는 매우 모호한 정의이고, 지금까지 변호인 참여를 제한한 이유가 바로 이 '신문 방해'였다는 점에서 개정안이 얼마나 피의자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이상희 변호사는 "피의자 자신도 헌법상의 진술거부권에 의해 수사에 협조하지 않을 수 있고 이것은 신문 자체를 방해하는 행위"라며 "그렇다면 신문 방해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자체를 제한할 정도로 우선적 가치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한다. 이 변호사는 "신문 방해는 매우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남용될 우려가 있다"고 말한다. 이와 관련해서 영국에서는 심지어 '묵비권 행사를 조인할 것이라는 이유로 변호사 입회를 금지할 수 없다'는 명시적인 조항을 두고 있기도 하다.

변호인의 신문조사 참여는 기본적으로 수사기관의 가혹행위나 폭력 등을 예방하는 역할은 물론,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을 권리'와 같은 실질적인 법적 조력을 가능케 한다. 또한 수사기관이라는 생소한 장소에서 갖게 되는 피의자의 심적 부담을 덜어준다는 점에서도 그 역할이 매우 크다. 송 변호사는 "형사소송법의 기본인 무기대등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수사단계에서의 변호인 참여가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하며 "변호인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진 피의자 신문 조서는 법원에서 증거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피의자가 수사당사자와 동등한 입장에서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는 권리는 재판뿐만 아니라 수사단계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권리의 제한은 반드시 법률에 의해야 하고, 그 내용도 구체적으로 시행령에 명시되어야 할 것이다.

변호인이 요청할 수 있는 권리에서 당연한 피의자의 권리로

현재 운용중인 법무부의 지침은 '변호인의 요청'에 의해 신문조사 참여를 허용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변호인의 신문 조사 참여는 '요청'에 의해 허용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참여' 자체가 기본이 되어야 한다. 즉,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에서 '변호인의 참여' 속에 신문을 받을 권리가 피의자의 권리로 명시되어야 할 것이다. 국제형사재판소 로마규정 55조 '수사중 개인의 권리 2'의 라'에서는 "자발적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포기하지 아니하는 한, 변호인의 참석 하에 신문을 받을 권리"라고 피의자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변호인의 신문 조사 참여'가 원칙적이고 기본적인 권리임을 보여주고 있다.

<기사 처음으로>

조례로 광장에 '담쌓기'

'시청광장 이용조례' 시의회 상정 ... 인권사회단체들 비판 일어

시청광장에서의 집회·시위 허가를 주요 골자로 하는 '시청광장 이용조례'가 끝내 서울시 의회에 상정됨에 따라 인권사회단체들이 기본권 침해라며 비난하고 나섰다.

서울시는 20일 '서울특별시서울광장의사용및관리에관한조례'(아래 시청광장 이용조례)를 148회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했다. 조례에 따르면 광장을 사용하려면 사용일 60일 전부터 7일 전까지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고, 광장의 조성목적에 위배되거나 심각한 손상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시장은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사용을 정지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도 있다. 게다가 광장사용료(시간당 1제곱미터의 사용료가 10원)를 부과하고 있으며, 광장에 손상이 발생된 경우에 배상을 해야 한다.

시청광장 이용조례에 대해 인권사회단체들은 △시청광장에 대한 사용신청과 허가를 받도록 한 점 △집시법의 규율대상이 되고 있는 집회·시위에 대한 업무는 전형적인 국가업무로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가 아니라는 점 △집회·시위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법률인 집시법이 설정하는 제한보다 엄격하게 장소에 대한 규제수단을 도입하고 있다는 점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개악집시법 연석회의는 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서울시에 전달한 바 있다.

민주노총 법률원 권두섭 변호사는 "헌법이 집회·시위를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음에도 시청광장 이용조례는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아서 집회시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효력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15조에 따르면 '주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 등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는 데 시청광장 이용조례는 그러한 위임이 전혀 없기 때문에 무효라는 것이다. 권 변호사는 "광장이나 도로와 같은 공적 공간을 관리하는 관청이라도 집회를 '허가'하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사용료 부과에 있어서도 "예를 들어 여의도 공원의 자전거 대여소와 같이 영리목적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받을 수 있겠지만, 집회·시위와 같이 영리와 거리가 먼 활동에 대해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만약 조례가 시의회에서 통과되면 앞으로 광장이용은 서울시장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결정될 위험성이 농후하다. 시청광장 이용조례가 집회·시위의 자유에 장소적 제한을 두어 '광장을 사라지게 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기사 처음으로>

프라이버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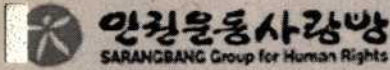
- 때 : 4월 23일 ~ 25일
- 장소 : 대전청소년교육원
- 문의 : 진보네트워크 센터 김정우(02-701-7688)
- 내용

1. 프라이버시 개괄 강의 및 토론
2. 주제별 워크샵 : 데이터베이스와 차별(노숙인DB, 의료DB 등)/ 생체정보를 통한 감시/ 국가신분등록제도의 현황과 대안/ ERP와 노동감시/ CCTV와 감시/ 휴대폰·인터넷의 위치정보와 프라이버시

<기사 처음으로>

제보 및 의견 | 어제의 인권하루소식 | 인권하루소식 검색

위로



인권교육 | 인권정보자료 | 인권하루소식 | 인권기화활동 | 인권영화제 | 감옥인권 | 인권운동연구소

인권하루소식

일간(2면발행, 일·월요일 제외)

창간 1993년 9월 7일

인권하루소식

2004년 04월 23일 (금)
제 2558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김영원 김정아

TEL 02-741-5363 | FAX 02-741-5364
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오 의 하루소식
하 소식 자세히 찾기
하루소식 주제별 찾기
만화 사랑방

<오늘의 기사 제목>

1. 미군, '움직이는 것은 모두 사살하라'
2. 클릭! 인권정보자료 「개악 집시법 불복종운동 매뉴얼」
3. '전쟁 중이라도 병역거부권은 인정돼야'
4. '동성애' 청소년 유해매체 심의기준에서 삭제

미군, '움직이는 것은 모두 사살하라'

이라크평화네트워크, 팔루자에서의 학살 이라크인들 증언을 통해 밝혀

"나는 길거리에서 개가 시체를 물어먹는 걸 봤다. 미군은 심지어 환자를 후송하는 엠블런스도 공격했다. 지금도 거리에 죽은 시체들이 널려있다" 팔루자에서 피난한 성직자 무하메드 씨의 증언이다.

팔루자에서 미군이 민간인에게 무차별적으로 자행하고 있는 학살의 증언들이 전해져서 충격을 주고 있다. 22일 이라크평화네트워크(아래 네트워크)는 미대사관 옆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팔루자 현지에서 채록한 학살의 증언들을 발표했다. 네트워크의 운영은 씨와 이라크인 2명은 바그다드와 팔루자 인근 사막 피난민 거처에서 4월 중순(13, 15-17,19) 5일에 걸쳐 팔루자 난민 349명을 만났다. 이중 12명의 절규 섞인 목소리를 1차 보고서에 담았다.

보고서는 '건물 옥상의 미군 저격수들이 팔루자 거리에서 움직이는 모든 물체들을 사살하고 있다'고 전했다. 사브리예 오베이드(75세 여성) 씨는 "지금 모든 건물 옥상과 지붕 위에 미군 저격수들이 있다. 그들은 길거리에 지나다니는 사람들을 쏘고 있다. 그래서 문을 열 수 없다"고 증언했다. 아흐메드 노와프(25세 남성)는 자신의 친구가 집 앞 정원에서 저격수에 의해 이마를 관통해 사살됐고, 아들을 구하러 나온 아버지 역시 같은 자리에서 사살됐다고 전했다.

지난 8일 미군은 팔루자 주민에게 "8시간 내로 팔루자를 떠나지 않으면 저항세력 무자헤딘으로 간주하겠다"고 발표한 후 서쪽 길을 터쳤지만, 이 길은 사막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미군은 사막의 반대편 바그다드 인접 지역을 봉쇄해 피난민들은 하루에서 이틀동안 사막에 갇혀있어야 했다. 하미드 제삼(54세 여성) 씨는 "도망쳐 나오는 과정에서 두 아이를 잃었다. 미군은 우리에게 대피하라고 해놓고 사막마저 봉쇄했다"며 "사막에 고박 하루동안 갇혀 있었는데 물을 마시지 못해 데리고 나온 우리 아이 두 명이 죽었다"고 증언했다. 사막의 갈증과 열기는 유아들을 먼저 죽음으로 이끌었다.

지난달 31일 미 경호원 4명의 죽음이후 미국이 "단호한 결단"이라는 이름을 걸고 심각한 보복공격으로 팔루자 민간인 600명 이상이 사망하고 1200명 이상이 부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네트워크의 임영신 씨는 "언론보도의 숫자에 드러나지 않는 진실이 있다"고 전했다. 또 임 씨는 "자이툰 부대원들과 그 가족들이 이 보고서를 봐야 한다"며 "자이툰 부대가 이라크에 가서 무엇을 하게 될 것인가를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조희연 교수도 "학살전쟁에 참여하는 이라크 파병을 결단코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네트워크는 이러한 반인륜범죄의 역사적 심판을 위해 이라크 학살의 진상을 담은 보고서를 평화박물관에 전달했다.

네트워크는 사진 및 영상기록을 포함한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해 학살의 진상을 알려 낼 계획이고, 팔루자 봉쇄가 풀리면 본격적인 조사단을 구성할 예정이다. 네트워크는 현지 소식을 iraqnow.org에 실시간으로 게재하고 있다.

<기사 처음으로>

클릭! 인권정보자료 「개악 집시법 불복종운동 매뉴얼」

준비된 불복종 속에 희망이 싹튼다

펴낸이: 개악 집시법 대응 연석회의/ 61쪽/ 2004년 4월

"부당한 법률은 그 자체가 일종의 폭력이다. 그 법률 위반에 대한 체포는 더한 폭력이다" 간디는 이러한 법의 폭력을 극복하는 길은 '비폭력 불복종'에서 찾았다. 굳이 간디를 언급하지 않더라도 "악법은 어겨서 깨뜨릴 수밖에 없다", "불복종만이 현재의 부정의 폭력을 극복하고 희망을 건설해낸다"라는 진리는 엄혹한 시대의 언덕을 넘는 민중의 등불이 되어 왔다.

현재 한국사회에서 불복종운동의 활시위를 당기도록 만든 대표적 악법은 개악된 집회 및시위에관한법률. 이 <매뉴얼>은 지난달 개악 집시법의 발효와 함께 불복종운동을 선언했던 인권사회단체들이 펴낸 불복종 행동 지침서다.

매뉴얼은 최근 개악된 조항들은 물론 그 동안 경찰의 자의적 집회 금지와 해산 수단으로 악용되어 왔던 기존 조항들의 문제점을 파헤치면서 이에 대한 불복종을 요구하는 한편 그러한 불복종이 헌법 정신과 인권의 원칙에 합치되는 근거들을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소규모·침묵시위만이 가능하게끔 만드는 과도한 소음규제에 대해서는 전면 불복종 이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말한다. 집회시위의 자유가 헌법상 보장된다면 단시간 동안의 소음발생은 이미 용인되는 것으로 봐야 당연하지 않겠냐는 것. 또한 폭력행사의 개인성이 희박한데도 전력 운운하며 금지를 통고하는 경우, 주거지역·학교·군사시설·외교기관 주변이라는 이유만으로 금지를 통고하는 경우, 질서유지인을 두고 야간 개최의 부득이한 사정을 밝혔는데도 금지를 통고하는 경우에도 집회시위를 계속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집회시위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부당한 명령에 불복하여 회생을 감수하지 않고서는 잃어버린 권리를 되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연석회의가 제안하고 있는 불복종운동은 집회시위의 '성역'을 뚫고 들어가는 것, 경찰의 자의적 '불법' 규정에 따지고 들자는 것, 각종 피해사례를 모아 헌법소원과 법 개정 운동의 밑거름으로 삼자는 것, 그 과정을 통해 집시법의 부당성을 온몸으로 느끼고 시민들에게 알려나가자는 것이다. 매뉴얼은 연석회의를 통해 구입하거나 홈페이지(<http://jipsi.jinbo.net>) 자료실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기사 처음으로>

"전쟁 중이라도 병역거부권은 인정돼야"

유엔 인권위, 보편적 인권으로 '병역거부권' 인정

"인권을 전면적으로 부정할만한 특수한 상황이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전쟁 중이더라도 말이죠.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아래 병역거부권)이 보편적 인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제60차 유엔 인권위원회(아래 유엔 인권위)에 참가하고 온 평화인권연대 정용욱 활동가의 말이다. 유엔 인권위는 19일 병역거부권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해 각국이 관련 법률과 관행을 결의안에 따라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이미 유엔 인권위는 병역거부권이 세계인권선언과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권리"임을 확인하며 병역거부권 인정과 대체복무제 마련을 각국 정부에 촉구한 바 있다.

특히 이번 결의안은 내용이 강화됐다는 게 일반적인 평이다. 결의안 공동 제안국이 14개국에서 34개국으로 늘어났고, 미국도 유엔 인권위에서의 발언을 통해 병역거부권을 지지했다. 또한 전후 평화건설 중인 국가에게도 '양심에 이유로 병역을 거부했던 사람들에 사면·복권 등을 제공하고, 그러한 조치가 법률과 관행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행되도록 권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 씨는 "전쟁시의 병역거부권도 인정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등 내전을 겪었던 국가들도 이번 결의안 제안에 참여했고 그 중에는 이미 병역거부권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국가들도 있다"며, "일부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과 같이 '한국의 특수한 상황'을 근거로 해서 인권으로서의 병역거부권을 전면적으로 부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정 씨는 병역거부권이 평화시기에 제기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2차 세계대전이라는 전쟁 중에 제기된 것임을 강조하며 "한국에서도 병역거부권을 인정하면서 제도적인 보완을 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521명이라는 엄청난 수의 병역거부자들이 감옥에 수감돼 있으며, 매년 약 700명의 병역거부자들이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받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이 결의안에 찬성했다는 역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정 씨는 "한국 정부는 겉으로는 찬성하는 척 하면서 실제로는 병역거부권을 인정할 의지도, 제도적으로 실행할 계획도 없다"고 비판하며, "유엔의 전반적인 분위기에 따라 -미국마저 동의한다고 하는데- 찬성할 뿐"이라는 정부관계자의 말을 전했다. 국제인권무대에서 한국정부의 이중적인 태도는 이주노동자 인권의 경우(본지 2004년 3월 24일 자 참조)와 마찬가지로.

그런데도 정 씨는 "2002년 이후 두 번째로 참가하면서 유엔의 역할과 국제연대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제네바에서의 활동을 평가했다. 또한 국내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현존하는 대체복무제도를 개선, 보완해서 병역거부자들이 할 수 있는 대체복무법안을 만들어내는 입법운동을 전개하고, 병역거부자들의 사면·복권 문제도 함께 제기할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한편,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구속수사는 여전히, 얼마 전 구속됐던 임태훈 씨의 보석이 마감됐고 지난 1월 병역 거부를 선언했던 영민 씨도 12일 구속됐다. 병역거부자들은 자신의 거부 사유 소견서를 병무청과 해당 경찰서에 제출하고 있지만, 검찰은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를 이유로 구속수사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 유엔 인권위에서 병역거부권을 인권으로 인정하는 결의안에 찬성한 한국정부가 국내에서는 병역거부자들에게 구속수사와 실형선고를 강제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인권증진과 보호의 의무는 인권의교를 위한 장식물이 아니다. 정부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에 관한 유엔 결의안을 국내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병역거부권을 인정하고, 대체복무제 도입을 통해 병역거부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중단해야 할 것이다.

<기사 처음으로>

'동성애' 청소년 유해매체 심의기준에서 삭제

'동성애'가 심의 족쇄를 벗게 됐다.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 기준에서 '동성애' 삭제 내용을 담은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

그동안 동성애자들과 인권단체에서는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기준에 '동성애'가 포함돼 있어, 동성애가 청소년에게 유해하다는 편견을 조장한다며 '동성애'를 심의기준에서 삭제할 것을 요구해왔다. '한국여성성소수자인권운동모임 끼리끼리'는 지난 2002년 10월, 국가인권위원회에 '동성애' 조항이 "성적지향에 의한 인권침해"라는 정을 냈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3월 인권침해라고 결정을 내렸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동성애를 차별적으로 명시한 것은 헌법의 행복추구권, 평등권 등을 침해한 행위"라며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의 개별심의 기준에서 동성애 삭제"를 권고한 바 있다.

<기사 처음으로>

제보 및 의견 | [어제의 인권하루소식](#) | [인권하루소식 검색](#)

위로



인권교육 | 인권정보자료 | 인권하루소식 | 인권기획활동 | 인권영화제 | 감옥인권 | 인권운동연구소

인권하루소식

일간(2면발행, 일·월요일 제외)

창간 1993년 9월 7일

인권하루소식

2004년 04월 24일 (토)

제 2559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김영원 김정아

TEL 02-741-5363 | FAX 02-741-5364

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오늘의 하루소식
하루소식 자세히 보기
하루소식 주제별 찾기
만화 사랑방

<오늘의 기사 제목>

1. <논평> 국가보안법, 개정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2. <기획> 직접민주주의의 씨앗 ① 국민투표
3. [연재] 60차 유엔 인권위원회 소식 (끝)

<논평> 국가보안법, 개정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오래도록 수면 아래 가라앉아 있던 국가보안법 개폐논의가 17대 총선 이후 급작스럽게 부상하고 있다. 여당에서도 다수가 개정과 폐지를 찬성하고, 민주노동당이 전면 폐지를 하겠다고 할뿐만 아니라 16대 국회에서 국가보안법의 존속을 주장했던 제1 야당인 한나라당 대표마저 개정을 언급하고 있다.

한 언론의 조사에서는 국회의원 당선자들의 경우 일부 개정 58.7%, 폐지 29.0%로 개정과 폐지를 주장한 국회의원이 전체 국회의원의 87.7%나 된다고 전했다. 이런 현상은 분명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렇지만 정치권에서 나오는 논의의 수준은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아직도 국가보안법과 같이 국제 인권기준에 현저히 위배되는 반인권 악법을 과감히 폐지하자는 의견이 소수인 것이 하나의 이유이고, 그 폐지조차도 대체입법을 전제로 한 의견을 가진 의원 당선자들이 상당수 있다는 것이 두 번째 이유이다.

때마침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신학철 씨의 '모내기 그림'을 이적표현물이라고 유죄판결 내린 법원의 결정이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제19조 2항을 위반했다고 우리 정부에 통보해 왔다. 위원회는 정부에 대해 유죄 판결에 대한 보상, 유죄판결의 무효화 등을 권고했다. 초보적인 인권기준조차 지키지 못하는 국가라는 오명을 언제나 벗을 수 있을지 창피스러운 뿐이다.

우리는 유엔 자유권위원회의 이번 결정 이전에도 박태훈, 김근태 사건과 국가 보고서 심의과정 등에서 남북이 분단되어 있는 현실을 감안하더라도 국가보안법은 궁극적으로 폐지되어야 한다고 권고하였음을 기억한다. 21세기에도 사상·양심의 자유, 의사표현의 자유마저 가로막는 국가보안법을 신주단지처럼 떠받치고, 국가안보를 위한 마지막 보루인양 절대화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조건 없는 전면 폐지, 그것만이 국가보안법의 운명이다. 17대 국회의원들이 아직도 일부 개정이나 대체입법을 전제로 한 폐지 입장을 가졌다는 것은 그들 스스로 인권의식이 부재함을 인정하는 꼴이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존중하는 보수주의자의 입장에서도 국가보안법은 용납될 수 없다. 이번 국회에서는 국가보안법에 기필코 사망 진단서를 발부하자.

<기사 처음으로>

<기획> 직접민주주의의 씨앗 ① 국민투표

농민회, 쌀개방 찬반투표 전개

[편집자주] 국민소환·발의제의 씨앗을 보여주는 몇몇 운동사례를 조명함으로써 아래로부터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요구가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는지 살펴본다.

현 제도하에서 국민에게 허락된 주권행사의 한 형태인 국회의원 선거가 끝났다. 이번 총선에서는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지적하며 국민소환·발의제가 주요 이슈로 등장했고, 각 정당들은 이에 맞추어 나름의 정책대안을 내놓기도 했다. 이미 사례로써 국민소환·발의제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곳도 존재한다. 이들이 현실에서 겪는 어려움, 운동의 한계는 지금 우리가 발 딛고 일어서야 할 운동의 과제를 던져준다.

특히, 국민발의제는 자신의 삶의 조건과 관련된 중요한 제도의 신설과 변경, 법안을 대리자 없이도 직접 발의하고 논의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그중 국민투표는 헌법의 개정, 법률의 제·개정, 주요 정책 등을 최종적으로 국민투표에 부쳐 확정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우리 헌법 72조는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고 하여 대통령의 자유 재량에 따라 국민투표 실시여부가 결정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총선이 막 끝난 지난 18일 경남 고성군 마암면에서는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을 뽑는 선거도 아닌 전혀 새로운 투표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다. 다른 아닌 '쌀개방 찬반을 묻는 농민총투표'. 마암면에 거주하는 주민 91%가 투표에 참여, 이중 쌀개방 반대는 92%나 됐다. 고성군 농민회 총무부장 최윤덕 씨는 "정부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시작했고, 누구를 뽑는 선거가 아닌 정책을 결정하는 새로운 투표였다"며 자랑스레 말한다. 부안의 사례가 있어서 주민들에게 쉽게 실례를 들어 투표를 통해 주민의 의사를 묻는 방식에 대해 설명할 수 있었고, 반응도 매우 좋았다고 전한다. 최 씨는 "주민들에게 쌀개방 사안을 알려나가는 작업이 의미 있게 진행됐다. 마을 사랑방 좌담회나 간담회를 통해 쌀개방 문제를 농민들에게 교육하기도 하고 직접 토론회를 해본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지적한다. 법적 효력은 없지만 여론에서 정부에게 쌀개방의 부당성을 압박한다는 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었다.

전국농민회(아래 전농)는 쌀개방 찬반 투표를 전국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농번기가 끝나는 5~6월에 본격적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전농 대외협력국장 민동욱 씨는 "농민의 의견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하나 마땅히 없는 현실에서 농민들이 쌀개방 사안에 대한 스스로 의견을 표현하기 위해서 찬반투표를 진행하게 됐다"며 하반기에 쌀개방 여부를 묻는 전체 국민투표를 제안해볼 예정이라고 한다. 비록 농민이 전체 인구의 0.8%에 지나지 않지만 쌀시장 개방은 국민 전체의 건강권과 식량권에 관련된 국민적 의제인 만큼 국민투표로 붙여질 조건이 충분하다는 지적이다.

현재의 제도적인 한계는 이들의 투표에 법적 효력을 부여하지 못하지만, 이러한 실험이 직접민주주의로 가는 지름길임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국회의원 선거에 60~70%의 투표율을 보이는 반면, 직접 의사를 묻는 투표에 90% 이상이 참여하고 있는 현실은 국민참여의 열망을 보여주는 것이다.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를 두려워하는 그들이 가막고 있는 '발의제'의 실험은 계속된다.

<기사 처음으로>

[연재] 60차 유엔 인권위원회 소식 (끝)

유엔 인권위원회 막 내려

60차 유엔 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23일 6주간의 일정을 마치고 막을 내렸다. 6년과 같이 인권위는 100개에 달하는 결의안과 결정을 내렸다.

올해 인권위의 과정과 결과에 대한 인권단체들의 평가는 '외화내빈'으로 요약할 수 있다. '양적으로는 작년과 대동소이하지만, 내용에서는 여전히 함량미달이 많다'는 말이다. 국가들의 정치적 이해 관계에 의해 인권위에 인권은 없어지고 정치적 흥정 또는 담합의 장으로 변질되었다는 지적이다. 60차 인권위에서는 '국익', '주권' 또는 이해를 로기를 내세워 인권위가 지금까지 발전시켜온 국제적인 인권감시 체도를 약화 또는 제거하는 주장과 발전권,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대한 국제사회의 합의를 무시 또는 부정하는 발언이 과거에 비해 더 노골적으로 이루어졌다는 평가이다.

나라별 결의안, 힘없는 나라에만...

정치적으로 가장 민감한 나라별 인권결의안의 경우 쿠바, 투르크메니스탄, 미얀마(버마), 벨라루스, 북한, 수단에 관한 결의안이 통과되었고 중국, 짐바브웨, 체첸의 경우는 부결되었다. 벨라루스와 북한의 결의안에는 특별보고관 임명이 처음으로 포함되었다. 올해 인권위 내내 관심의 초점이었던 중국결의안은 예상대로 불처리 동의를(no-action motion)이 찬성 28, 반대 16, 기권 9로 통과됨으로써 결의안 상정 자체가 무산되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짐바브웨는 불처리동의안(찬성 27, 반대 24, 기권 2) 채택으로 상정이 무산되었고 체첸의 경우는 표결에서 찬성 12, 반대 23, 기권 18로 부결되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인권단체들의 반응은 다소 냉소적이다. 즉 '강대국(중국과 러시아)과 친구가 많은 나라(짐바브웨)는 결의안을 피해나가고 힘없고 고립된 나라들만 걸려든다'는 인권위의 위선에 대한 비판이다.

이 와중에도 이번 인권위는 몇몇 분야에서 긍정적인 성과가 있었다. 가장 의미 있는 성과는 테러리즘을 대처하는 과정에서 인권을 보호하는 문제에 관한 결의안을 표결 없이 만장일치로 채택한 것을 꼽을 수 있다. 이 결의안에 따라 임명될 독립전문가는 각국의 대테러 법안이 국제인권규범에 맞게 제정되고 이행되도록 하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결의안은 작년 멕시코가 추진하다가 미국의 압력으로 포기했었는데 이후 대다수 인권단체들의 집중적인 지원과 노력을 배경으로 올해 채택되었다. 이밖에도 올해 인권위에서는 인신매매와 불처벌에 관한 특별보고관 제도가 채택됐다.

인권교육 3년 행동계획 추진

인권교육의 경우 인권고등판무관실이 제안한 인권교육에 관한 협약 제정은 큰 호응을 얻지는 못했다. 그러나 관심을 모았던 인권교육을 위한 두 번째 10년 선포는 논의에서 인권교육을 위한 세계프로그램으로 바뀌었다. 만장일치로 채택된 결의안에 따르면 인권고등판무관실은 유네스코와 협력하여 인권교육 3년간의 행동계획을 유엔 총회에 제출하도록 되어있다. 인권단체들은 구조적 성격이 강한 10년 보다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 성격이 강한 이 결의안을 환영하는 분위기이며, 결의안 로비에서 형성된 인권단체 연대회의가 앞으로 이행과정에서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초국적기업(TNCs)의 활동을 제약하는 국제적인 인권규범을 만들자는 유엔 인권소위원회의 제안은 협상에서 인권고등판무관실이 이에 관한 사례 및 조사연구를 해서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귀결됐다. 인권위 초반 적지 않은 선진국과 후진국 정부가 부정적인 태도를 보여 고사될지 모른다는 우려도 있었지만 이 문제는 유엔 인권위에서 계속해서 다뤄지게 됐다.

인권과 성적지향의 경우 작년과 마찬가지로 올해에도 이에 관한 결의안 상정이 좌절되었다. 인권단체들의 지지와 격려에 힘입어 재상정을 시도했던 브라질은 이슬람국가와 바티칸 그리고 미국의 압력으로 중도에 포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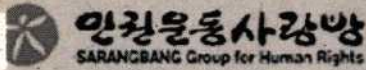
한국정부, 눈치보기·이중잣대로 일관

한편 '참여정부' 출범 후 두 번째 맞이한 인권위에서 한국정부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눈치보기와 이중잣대 관행이 이어졌다. 나라별 결의안의 경우 '국익'논리에 따라 강대국 관련 결의안(체첸, 중국)은 기권, 작은 나라의 경우 미국 및 유럽과 보조를 맞추어 찬성하는 이중잣대의 관행은 여전했다. 올해 표결에서 꼽을 수 있는 긍정적인 변화는 사형제도에 대한 한국정부의 입장변화이다. 한국정부는 작년까지 사형제도 폐지 결의안에 반대해왔는데 법무부의 전향적 입장을 수용하여 기권표를 행사했다. 그러나 발전권 및 인종차별 관련 결의안에서 한국 정부는 여전히 기권을 해 참여정부의 인권외교정책이 구태의연함을 그대로 드러냈다.

<기사 처음으로>

제목 및 의견 | 어제의 인권하루소식 | 인권하루소식 검색

위로



인권교육 | 인권정보자료 | 인권하루소식 | 인권기획활동 | 인권영화제 | 감옥인권 | 인권운동연구소

인권하루소식

일간(2면발행, 일·월요일 제외)

창간 1993년 9월 7일

인권하루소식

2004년 04월 27일 (화)

제 2560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김영원 김정아

TEL 02-741-5363 | FAX 02-741-5364

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오늘의 하루소식
하루소식 자세히 보기
하루소식 주제별 보기
만화 사랑방

<오늘의 기사 제목>

1. 빈곤은 인권을 잠식한다
2. <기자의 눈> 시청 앞 광장, 특별관리 대상?
3. ● 김중서의 인권이야기 ① 소음규제를 통해 얻으려는 것은?
4. 주간인권흐름(2004년 4월 19일 ~ 2004년 4월 26일)

빈곤은 인권을 잠식한다

대한변협, IMF 이후 빈곤층 인권실태 보고 및 토론회 개최

생활고로 인한 자살, 신용불량자의 증가 등 '신빈곤'이 급속히 확산되는 가운데 IMF 이후 빈곤층의 인권 실태에 대한 토론회가 열려 주목을 끌었다. 26일 대한변호사협회는 「2003년 인권보고서」 발간을 기념하며, 'IMF 경제위기 상황의 극복과정과 빈곤층의 사회적 인권 실태보고 및 토론회'를 통해 신빈곤의 심각성에 대해 공유하고 대책 마련을 논의했다.

발제를 맡은 김남근 변호사는 "빠르게 IMF 경제위기를 극복하기는 했으나, 구조조정이 노동의 유연화를 통해 이루어지다 보니 퇴출과 정리해고가 활성화되어 많은 실업자가 양산되고 비정규직이 늘어났다"며 "실업자와 비정규직을 중심으로 신빈곤층이 빠르게 확산되었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신빈곤층의 바람막이가 되어줄 사회보장제도가 제구실을 못하고 있어 이들의 인권이 크게 후퇴하고 있다는 진단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빈곤층이 300만 명에 이르지만 그 중 190만 명은 비수급빈곤층이라고 김 변호사는 전했다. 뿐만 아니라 허선 순천향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 후 수급권자가 151만 명에서 149만 명으로 오히려 줄어들었고 2003년 5월에는 135만 명으로 더 줄었다"고 발표했다.

특히 빈곤층에게 있어 주거문제가 심각함에도 정부 정책은 경기부양과 건설경기 활성화 등을 빌미로 주거권 보장 측면보다는 시장경제 논리로 일관했다. 김 변호사는 "서울시의 주택보급률은 이미 100%에 가깝지만 자가보급률은 40%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며 "이는 결국 몇몇 소수가 여러 채의 집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대 유영우 사무총장은 "주거권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자 인권"이라며 "이를 보장하는 것은 사회의 책무"라고 주장했다. 우리 사회에서 주거권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집을 '주거의 공간'이 아니라 '재산증식의 수단'으로 보는 사회적 관념부터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최근 소득불평등은 점점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소득불평등 지표로서 지니계수(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이 높아짐)는 IMF이후 2000년 0.423까지 낮아지다가 지난 2001년부터 급격하게 높아져 2002년 1/4분기에는 0.450으로 상승했다(도시전가구 기준, 2002년, 김진옥). 이번 토론회는 이러한 빈부의 격차뿐만 아니라 빈곤이 우리사회에서 얼마나 넓고 깊게 확산되었는지 보여주는 자리였다. 토론회 참가자들은 한 목소리로 신빈곤층의 인권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입을 모았고, 김동춘 성공회대 교수는 "이제 우리 사회도 권리로써의 사회적 인권이라는 개념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신빈곤과 관련하여 비정규직, 신용불량자 문제에 대한 토론회도 함께 이뤄졌다.

<기사 처음으로>

<기자의 눈> 시청 앞 광장, 특별관리 대상?

올해 5월 새로 조성되는 시청 앞 광장 '서울광장' 사용에 대한 조례안과 관련, 인권사회단체들의 잇따른 비판에 대해 서울시는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기 바빴다. 26일 '서울광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대한 공개 토론회에서 서울시 당국 관계자가 "조례에 의해 제한되는 행사들은 거의 없을 것"이라 말하자 인권사회단체는 "그런 불합리

한 조례는 필요가 없다"며 거침없는 비판을 던졌다.

서울시는 "서울광장에 규제가 없으면 시민들 사이에 충돌이 발생할 것"이라며 조례안이 필요하다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여의도 공원 등의 공공장소가 별다른 규제 없이 유지되고 있는 것 그리고 탄핵 시위 등에서 보여진 시민들의 자발적인 질서 등을 보았을 때, 서울광장에 특별히 조례안을 두어 사용 규제를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

조례안 중 서울광장 사용 시에 서울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점에 대해 윤학권 서울시 의원은 "사용 허가 제도는 실질적으로 신고 제도처럼 쓰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집시법에서도 해당 경찰서에 허가가 아닌 신고만 하도록 되어있는데, '신고 제도처럼 쓰일 허가 제도'를 비판에도 불구하고 굳이 고수하는 서울시의 태도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

인권사회단체에서는 조례안이 합리적으로 쓰이기보다는 자의적으로 쓰여져 집회와 시위의 권리를 제한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목적에서 조례를 만든 것이 아닌가 경계심 어린 추측을 하고 있다.

서울광장을 공개모집 당선안 '빛의 광장'으로 만들려던 처음 계획과 달리 몇몇 관직자의 결정으로 잔디를 깔아버린 서울시의 일방적 행정에 대해 시민들의 반발이 커져가고 있다. 광장의 감동을 경험한 시민들은 더 이상 '광장민주주의'의 퇴보를 용납하지 않을 자세이다.

<기사 처음으로>

● 김중서의 인권이야기 ● 소음규제를 통해 얻으려는 것은?

지난 해 연말 개악된 집시법은 이미 진행중인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도 금지통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집회 금지 장소의 범위를 엄청나게 넓혔을 뿐 아니라 도심에서는 종래 허용되던 행진마저도 금지한 노무현 정권 최악의 입법이라 할 만하다. 집회의 자유가 사회적 소수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집단적 의사표현과 항의를 가능케 하여, 민주주의 사회를 지탱시키는 가장 중요한 정치적 기본권의 하나라는 상식은 이 법 속에서 철저히 부정된다. 이 법은 집회나 시위에 대하여 경찰이 채택해 왔던 "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이라는 논리를 당당히 법률에 의하여 뒷받침한 것으로, 이미 제안 단계에서부터 '집회금지법'이라는 비난을 받아 온 것도 바로 그 때문이다.

이 법이 새로 도입한 내용 중 하나가 소음규제인데, 지난 20일 경찰청은 '집회시 합리적 소음기준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소음규제는 새로 도입된 것이긴 하지만 개악 집시법의 핵심적 문제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왜 하필 "소음기준"에 대해서 토론회를 개최했을까?

집회의 자유에 불가피하게 따르는 단시간의 소음 발생을 사회가 수인해야 한다는 것은 집회의 자유를 인정하는 기본적 전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악 집시법이 이를 무시한 채 법률도 아닌 시행령에 의해 결정되는 소음규제를 도입한 것은 그것이 가지는 두 가지 효과 때문이라라. 즉, 누차 지적되어 왔듯이 확장기의 사용이 불가피한 대규모 집회를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을 뿐 아니라, 소음 규제는 금지통고 등의 나머지 규제 수단과는 달리 정량적인 규제의 형식을 띠므로 경찰의 자의적 규제라는 비판을 피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요컨대 소음규제를 통하여 경찰은 가장 영향력 있는 집회들을, 가장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차단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을 얻게 된다. 더구나 이러한 규제기준이 시민단체들이 참가한 공개토론회를 통하여 마련된다면 그 효과야 이두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이번 토론회의 목적은 바로 여기에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서는 소음규제기준 마련이라는 아주 구체적인 사항에 초점을 맞추으로써, 개악 집시법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회색시켜 버리려는 의도가 여기에 숨어 있다.

그러나 사실 이 법의 통과로 정부가 늘 강조하는 '선진적 집회 시위 문화'의 정착은 영원히 물 건너갔다. 사회적 소수자들이 자신들의 의사를, 특히 정부 정책에 대한 항의의 뜻을 전달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집회와 시위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누구도 보지 않는 장소에서 아무런 효과도 없는 '합법' 집회를 하기보다는 불법으로 규정되더라도 자신의 의사를 분명히 전달할 수 있는 집회를 선택할 것임은 너무나 분명하다.

이 점을 생각한다면 이제라도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집회금지법의 한 수단인 소음규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집회보호법으로 만드는 일이다.

◎김중서님은 배재대학교 법학부 교수입니다.

<기사 처음으로>

주간인권흐름(2004년 4월 19일 ~ 2004년 4월 26일)

1. 경찰청도 서울시도 '집회·시위 자유'는 나몰라라

경찰청, 개정 집시법 시행령 중 소음규제 관련 토론회 열고 '80데시벨'이 타당하다고 주장...개악집시법대응연석회의, "사실상의 모든 집회 금지"라며 강력히 반발(4.19)/ 서울시, 유료 및 시장의 사용허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서울광장 사용조례' 시의회에 상정...문화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반대(4.20)/ '서울광장 이용 조례' 토론회 열려, 시정 관계자 '집회시위 제한 목적 없다', 그러나 '이용 제한 필요' 주장...시민사회단체, '조례가 자유로운 이용 막아', '조례제정 의도 불순' 반박(4.26)

2. 이라크 연합 주둔군 "나 돌아가고 싶어"

스페인, 판할지인 이라크 중부 나자프 등에서 조기철군(4.18)/ 이라크내 연합 주둔군 철수 의사 이어져...온두라스, 철군 밝혀(4.19)/ 도미니카공화국, 스페인여단 산하 자국군 철수 밝혀(4.20)/ 이라크 저항세력, 이라크 남부 바스라에서 경찰서 연쇄 차량폭탄 공격...이라크 민간인 등 60여명 사망/ 휴전 합의됐던 이라크 팔루자, 다시 총성 울려/ 노르웨이, 이라크에서 군대 철수 의사 밝혀(4.21)/ 이라크평화네트워크, 팔루자 현지의 증언 모아 미군 학살만행 보고서로 발표(4.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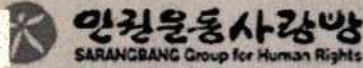
3. 기타

매항리미공군폭격장철폐를위한주민대책위원회, 내년 8월 폐쇄되는 매항리 사격장에 평화박물관 설립 추진 밝혀(4.19)/ 420장애인차별철폐투쟁공동기획단, 장애연금법 제정, 장애인 노동권·이동권·교육권 확보 등을 요구하며 한 달간 벌어난 농성 정리... 420장애인차별철폐투쟁결의대회 열어/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기준서 '동성애'삭제...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4.20) /한나라 박근혜 대표 '국가보안법, 개정보완 여지 있다'고 밝혀(4.21)/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공공의료 확대 등 주장하며 '건강보험적용 확대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 돌입/ 서울시교육청, '0교시, 보충·자율학습 금지 지침' 위반 고등학교 적발/ 북, 통천역 열차 충돌 폭발사고 발생으로 인명피해 커(4.22)/ 공개적으로 민노당 지지를 밝혔던 전국공무원노조의 김영길 위원장과 안병순 사무총장 구속(4.23)/ 북 통천역 사고로 초등생 76명 포함 150여명 사망, 1300여명 부상 밝혀며 국제사회에 지원 요청...한국정부, 중국, EU, 러시아 등 국제사회 지원 밝혀(4.24~25)/ 대법(주심 이용우 대법관)1부, 여직원 '어깨 주무른' 상사에 대해 무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본인의사에 반하면 성추행"이라고 판결(4.26)

<기사 처음으로>

제보 및 의견 | 어제의 인권하루소식 | 인권하루소식 검색

위로



인권교육 | 인권정보자료 | 인권하루소식 | 인권기획활동 | 인권영화제 | 감옥인권 | 인권운동연구소

인권하루소식

일간(2면발행, 일·월요일 제외)

창간 1993년 9월 7일

인권하루소식

2004년 04월 28일 (수)
제 2561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김영원 김정아

TEL 02-741-5363 | FAX 02-741-5364
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오늘의 하루소식
하루소식 자세히 찾기
하루소식 주제별 찾기
만화 사랑방

<오늘의 기사 제목>

- 1. 검찰, 또다시 과도한 구형
2. > 즐거운 물구나무 < '명령과 위엄'만 남아 있는 곳
3. <기획> 직접민주주의의 씨앗 ② 국민발의제
4. <기고> 2004년 전국정보운동포럼 - 정보인권과 프라이버시

검찰, 또다시 과도한 구형

통일연대 민경우 씨,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0년 구형 받아

정치권을 비롯한 사회일각에서 국가보안법 개폐논의가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는 최근, 검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자에게 과도한 형량을 구형해 비판이 일고 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이현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민경우 씨 결심공판에서 서울지검공안2부(이재원 부장검사)는 징역 10년과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통일연대 사무처장 민경우 씨를 지난 1월 국가보안법상 간첩, 회합·통신, 고무·찬양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통일연대는 27일 성명을 통해 "관례에도 벗어난 구형이라는 점에서 공안검찰이 국가보안법 사수라는 정치적 목적을 내포한 의도적인 선전포고"라고 밝히며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주장했다. 민가협 한지연 활동가는 "민 씨의 활동은 공개되어 있는 민간통일운동이었고,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삼는 것 자체를 인정할 수 없으며, 어떤 근거로 10년을 구형했는지 납득할 수 없다"며 남북화해 시대에 걸맞지 않는 구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송두율 사건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계속 중형을 구형하고 있는 점에 대해 "남북관계의 정치적 변화와 국민의 정서도 완화되고 있는데 국가보안법 사건에 있어서 검찰의 구형량이나 내용은 보수적이고 구태의연하다"고 비판했다.

특히 검찰의 공소내용 중 '국가기밀 탐지, 수립, 전달' 혐의에 대해 권오현(양심수 후원회 회장) 씨는 "검찰은 2000년 통일대축전과 11차 범민족대회 남측준비위의 조직체계 결성선언문, 김대중 대통령에게 보내는 특별서한, 2000년 통일대축전의 진행상황 등을 국가 기밀이라고 했다. 그러나 열거된 모든 것들은 모두 공개적으로 진행되었고, 또 공개된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통일운동을 함께 하는 범민련 남측본부와 공동사무국 사이의 진행상황 등을 주고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과정이다.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는 사무절차에 지나지 않는 것을 국가기밀이라며 심지어 '간첩'이란 용어까지 사용한 것은 상식을 벗어난 일"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권 씨는 '찬양·고무·이적표현물 제작, 배포, 판매'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이 범민련 남측본부 기관지 <민족의 진로> <범민련 10년사> 또는 행사 자료집 등을 제작 배포했다 해서 국가보안법 7조를 적용하고 있지만 그러한 출판물은 자신들의 정당한 활동과 지향점을 나타내기 위한 최소한의 자기표현 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 만일 검찰의 시각으로 본다면 우리사회 수많은 정당, 사회단체가 이적표현물을 제작, 배포하는 행위가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민 씨는 2000년부터 2002년까지 범민련 남측본부에서 활동했으며 2003년부터는 통일연대에서 활동해 왔다. 선고공판은 오는 5월 14일로 예정되어 있다.

<기사 처음으로>

> 즐거운 물구나무 < '명령과 위엄'만 남아 있는 곳

재판을 앞둔 한 아이(가명 미정, 16살)와 함께 법원을 찾은 적이 있다. 자전거를 훔친 사건이었지만 처음인 점 등이 고려돼서 미정이는 가장 약한 처분이라는 1호처분(6개월간 매주 1번씩 상담 받을 것)을 받았다. 법정에서 처분을 받은 날, 미정이네 가정 상태에 대한 간략한 조사가 있었다. 미정이는 알콜릭에 장애 3급, 정신분열까지 갖고 있

는 아빠와 단둘이 산다.

법원의 결정 후, 담당자는 '상당자 지정과 처분에 대한 서면공지' 때문에 한번 더 법원에 오라고 했다. 나는 오전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아이의 사정을 고려해 달라고 했지만, 판사와 달리 담당자는 요청을 들어 줄 수 없다고 했다. 미정이나 나는 약속시간 보다 늦게 담당자를 만나러 갔다.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가르마를 칼처럼 낸 40대 남성이 우리를 불렀다. 우리는 교무실에 불려온 아이들처럼 그가 앉아 있는 책상 앞에 서있었다. 그는 이름을 확인하더니 아이에게 "똑바로 서라", "옷을 바로 입어라"는 등 고압적인 태도를 보였다. "너 몇시에 일어났어?, 왜 너만 늦어? 법을 뭇로 알고있는 거야, 이 자식이 반성하고 있는 것 맞아, 아니지?"라며 옥박질렀다. 소년법정의 판사가 부드러운 말과 태도로 아이를 다독이던 모습과는 사뭇 다른 태도였다. 자신이 누구인지 소개도 안하고 상황이 어떻게 된 것인지 묻지도 않은 채 큰 소리로 아이를 다그쳤다. 말을 건넬 틈도 없이 그가 늘어놓는 훈계를 들어야 했던 것은 지금 생각해도 분통이 터진다.

법원을 대표해 아이를 만난 조사관은 '열 여섯 살 아이가 왜 비행을 저지르게 됐는지, 아이의 가정환경이 어떤지, 상황개선을 위해 사법기관이 무엇을 해야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고민이 없었다. 열 여섯 살 청소년에 대한 '배려'가 실종된 자리에서 '위엄과 명령'만 남아 아이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더욱이 '법을 어겼다'는 행적과 '나이가 어리다'는 현실은 누군가를 무시하고, 몰아세우기에 무적이거나 이가 잘 맞는 톱니가 아니던가. 그렇지 않아도 주눅이 들어 있던 아이의 어깨가 더 움츠러 들었다. 법정의 판결로만 청소년 보호를 운운할 것이 아니라 시선이 집중되지 않는 법정 이면에서 벌어지는 '위압적인 태도'도 함께 변해야 할 것이다.

<기사 처음으로>

<기획> 직접민주주의의 씨앗 ② 국민발의제

조례제정 과정을 통해 엮은 국민발의의 가능성

올해 초 국회 정문 앞에서는 연일 시위가 끊이지 않았다. FTA를 반대하며 전국에서 상경한 농민들, 파병반대를 외치며 노숙농성을 펼친 국민들, 그럼에도 결국 국회의 결정은 분노와 허탈함만을 안겨주었다. 국회가 민의를 뺏겨치고 국민은 국회만을 바라보는 해바라기의 역할이 일상적으로 진행되어 국민은 정치적 냉소에 빠졌다. 민의 배반의 절정이었던 탄핵정국에서 마침내 국민발의제 등 직접민주주의의 요소를 도입하는 요구가 일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위에서의 주민발의를 통한 조례제정 운동은 국민발의제의 가능성과 도입 효과를 타진케 한다.

전라남도 학교급식조례제정을 시작으로 서울·경기에서 같은 내용의 조례제정운동이 진행되고 있으며 부산에서 부산보육조례, 경기도 성남시에서 공공의료기관 설립조례 운동이 자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조례제정운동은 직접민주주의의 가능성과 현 지방자치제도의 한계 둘 다를 드러낸다.

정치적 관심·의식 월등히 고취

지난해 9월 전남에서 직영급식 원칙과 식재료의 우리농산물 사용, 무상급식 대상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학교급식조례를 주민들이 발의하여 전남지방의회가 통과시켰다. 조례제정을 위해 주민들에게 밀착해 운동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은 진정한 주권자로 한 발짝 다가갔다. 당시 학교급식조례제정전남운동본부 공동대표였던 전종덕 도의원(민주노동당)은 "행정에서 객체로 있던 사람들이 주체로 일어섰다"며 "선거 때만 자신의 대표를 뽑던 형태에서 상시적으로 행정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고 말한다. 전 의원은 또한 "처음에 주민들은 행정이나 정치적 과정에 낯설어 하고 복잡해하다가 주민발의 이후 도의 전반적인 도정과 의정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게 됐다. 특히 주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대의제 밖의 민주주의는 실현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주민 하나 하나가 공적 의사결정에 참여할 때의 혼란을 우려한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집행되는 과정에서 설사 혼란이 있더라도 직접민주주의의 장점이 더 많다"고 말한 후 "주민들이 직접 나서서 공감대를 형성해나가는 과정을 어떻게 혼란이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혼란야기는 평계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여전히 한계 많은 현행 주민발의제

지난해 7월부터 의료체계가 취약했던 성남에서는 공공병원 설립을 위한 조례제정운동이 진행되었다. 주민들이 의료에 대한 많은 필요를 느꼈던 만큼 자신들의 생활과 관련된 일을 직접 구상하고 결정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했다. 2주만에 청구인 정족수 1만 5000명을 초과하는 2만명이 서명했고, 건강권 확보 시민 걷기 대회는 7천여명이 참여해 병원 설립에 대한 열망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지난 3월 25일 성남시의회는 '시립병원설립조례'를 안전으로조차 상정하지 않았다. 시의회의 파행적인 운영으로 주민들의 요구가 좌초한 것이다.

그러나, 주민발의를 통한 조례제정 과정에서 얻는 성과는 '급속조례제정 성공'에 못지 않다. 성남시립병원 설립을 위한 범시민추진위원회 김현지 사무국장은 "조례안 심의가 진행되는 시의회에 주민 100여명이 방청을 와서 방청석이 모자랄 지경이었다. 관심이 많아지고 자치사안 결정 과정도 많이 알게 됐다"며 "주민들이 본인들도 모르는 사이에 의식이 고양되는 등 많이 변한 것 같다"고 말한다. 하지만, 성남의 주민들은 의회가 주민들의 요구를 파행적으로 거부하는 과정에서 또 하나의 교훈을 얻었다. 의회의 결정만을 바라보는 주민의 처지와 주민의 요구에 아랑곳 않는 의회가 주민의 요구를 배반할 수 있다는 점이다. 김 사무국장은 "주민들은 '이렇게 많이 원하고 있는데도 자치단체장이나 시의회에서 안 받아 주면 안 되는 거구나'하며 많은 한계와 좌절감을 느꼈다"며 "시의원들이 개인적인 이해로 반려될 수 있는 구조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성남 사례는 주민발의는 허용되지만, 여전히 결정은 의회가 하는 현 구조를 넘어 주민투표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주민투표의 씨앗, 국민발의로 자라야

해의 사례는 국민발의제가 어떤 방식으로 구현되는지 보여준다. 미국의 경우 21개 주가 주민에게 법률 발의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평균 5%(2%에서 15%)의 서명으로 발의안을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일본의 경우 유권자의 1/50 이상의 서명으로 조례의 제·개정과 폐지를 요구할 수 있다. 최근 병원의 존속·확충, 미군기지의 정리·축소 등이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된 조례들이다. 스위스는 1989년 '스위스사회주의청년단'이 주도하여 발의된 '군대폐지안'이 국민투표에 부쳐졌다. 투표결과, 발의안 통과는 부결됐지만, 군대개혁안을 담은 군대법 통과에 기여한 바 있다.

아직까지 우리 헌법 40조는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국민들이 자신의 삶의 문제를 결정하는 과정은 여전히 '입법기관'을 통해 이뤄질 수밖에 없다. 파병동의안에 반대하는 평화의 목소리를 담은, 국민의 먹거리를 좌우하는 한-칠FTA 비준안에 대한 거부의 뜻이 담긴, 최저임금 현실화를 강제할 수 있는 힘으로서의 발의제를 이제 국민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기사 처음으로>

<기고> 2004년 전국정보운동포럼 - 정보인권과 프라이버시

감시와 차별을 부르는 정보사회 대응전략 모색

프라이버시 운동을 해온 정보인권운동활동가들이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대전에서 '프라이버시'를 주제로 전국정보운동포럼을 열었다. 정보화시대에 민주주의와 인권을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로 해마다 열리고 있다. 지난 포럼들은 자기정보통제권, 표현의 자유, 정보공유의 권리 등 정보운동의 여러 주제에 대해 폭넓게 다루었지만 매년 하나의 주제에 집중하여 토론하자는 평가에 따라 올해에는 프라이버시를 주제로 선정했다.

특히 올해는 네이스, 장기미아 유전자정보 데이터베이스 등으로 인권운동진영 전반에 정보인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많은 인권단체활동가들이 참석했다.

정보운동포럼에서는 프라이버시 일반 및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무선전자태그)에 대한 강연과 △데이터베이스와 차별 △생체정보를 통한 감시 △국가신분등록제도의 현황과 대안,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와 노동감시 △CCTV와 감시 △휴대폰, 인터넷의 위치정보와 프라이버시 등 6개 워킹샵, 인권교육, 지난해 정보운동평가와 올해 활동의 전망에 대한 토론 등의 행사가 2박3일 내내 진행되었다.

프라이버시의 일반원칙에 대해 강연한 중앙대 이인호 교수는 △익명거래의 원칙 △합법성의 원칙 △분리처리의 원칙 △시스템공개의 원칙 △수집제한의 원칙 △목적구속의 원칙 △제공제한의 원칙 △정보정확성의 원칙 △참여, 보안, 책임, 감독의 원칙 등 프라이버시를 지키기 위한 열 두 가지 원칙에 대해 설명했다.

무선전자태그로 확대되는 감시망

RFID는 교통카드 등에 쓰이는 무선태그로, 특정한 주파수대역을 쓰며 2-3미터 정도의 근거리에서 통신이 가능하다. 하지만 최근에는 통신거리가 늘어나고 크기도 획기적으로 작아지면서 생산되는 모든 상품에 RFID를 삽입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강연을 한 피스넷의 전용휘 사무처장은 이런 상황이 가속화하면 상품을 소지하고 있는 개인의 모든 움직임이 RFID에 의해 포착되고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될 것이라고 지적해 참석자들을 긴장시켰다.

데이터베이스가 차별 불러와

데이터베이스와 차별 워킹샵에서는 전사회적으로 구축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들이 장기미아 데이터베이스, 노숙인 데이터베이스 등 그 자체로 직접 차별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것은 물론, 왜곡된 사회구조를 수치화하고 객관적인 자료로 활용되어 차별적인 사회 구조를 공고화할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생체 정보를 통한 감시 워킹샵에서

는 국가기관에 의한 신원확인 유전자데이터베이스의 문제점을 다뤘다. 개인의 유전정보가 활용되는 영역이 확대되고 있는데, 이로 인한 차별이 사회 문제가 되고 있으며 유전정보가 하나의 사회 권력으로 자리잡고 있는 상황에 대해 공유했다.

국가신분등록제도 워크샵에서는 자기정보통제권을 지나치게 침해하고 있는 현재 국가신분등록제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주민등록법과 호적법의 구체적인 개정방안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었다. 회사 안의 모든 업무를 정보기술을 이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인 ERP는 노동자에게는 보이지 않는 감시카메라이며 노동권을 훼손하는 감시통제시스템이다. ERP 워크샵에서는 이러한 ERP에 저항하는 노동자들의 사례와 대응 원칙, 방안 등이 토의됐다.

위치정보, 프라이버시권 침해

CCTV와 감시 워크샵에서는 무차별적으로 설치되고 있는 CCTV에 대한 규제방안과 반대운동 전반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위치정보와 프라이버시 워크샵에서 발제자는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네트워크화하고 모바일화한 통신으로부터 파생하는 새로운 정보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이러한 정보 중 중요하게는 위치정보를 들 수 있다. 그런데 위치정보는 개인이 특정 시점에 특정 위치에 있었다는 점을 담고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위치정보 수집 자체가 프라이버시 침해가 되며 오남용의 위험성도 있고, 국가가 시민을 감시할 수 있는 능력이 커진다. 또한 위치정보는 상업적으로 이용될 위험성이 있고, 노동자에 대한 감시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

프라이버시 운동의 발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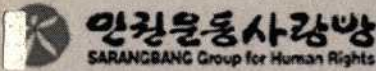
2003년은 정보인권 운동 중에서도 프라이버시 운동이 비약적으로 성장한 한 해이다. 네이스 반대 투쟁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정보인권'을 구체적으로 느끼게 되고 사회적으로 확산되었다. 정보운동 평가와 전망을 토론하는 자리에서 발제자인 함께하는시민행동 박준우 씨는 1996년 전자주민카드 반대운동에서 시작한 프라이버시 운동의 첫 단계가 2003년에 매듭지어지고 가시화 되었다고 평가하고, 다음 단계로 이행해야 한다고 전망했다. 또 토론에서는 점차 분화되고 있는 정보인권 운동이 좀 더 나은 답을 얻기 위해 다른 부문 운동들과 연대와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 운동의 확대와 대중화를 위해 적극적이고 폭넓은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 법률 대응 중심에서 벗어나 대중운동과 교육운동을 고민하고 확대해야 한다는 점 등이 제기되었다.

참가자들은 총평을 통해 이번 포럼이 프라이버시와 정보인권의 기본적인 개념교육의 필요성을 일깨웠고, 정보인권을 중심으로 제기된 여러 프라이버시 이슈와 활동들을 공유, 토론하며 2003년의 활동 평가, 2004년 정보인권과 프라이버시권 운동의 전망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었다고 평가했다.

<기사 처음으로>

제보 및 의견 | 어제의 인권하루소식 | 인권하루소식 검색

위로



인권교육 | 인권정보자료 | 인권하루소식 | 인권기획활동 | 인권영화제 | 감옥인권 | 인권운동연구소

인권하루소식

일간(2면발행, 일·월요일 제외)

창간 1993년 9월 7일

인권하루소식

2004년 04월 29일 (목)
제 2562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김영원 김정아

TEL 02-741-5363 | FAX 02-741-5364
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오늘의 하루소식
하루소식 자세히 찾기
하루소식 주제별 찾기
만화 사랑방

<오늘의 기사 제목>

1. '산재사망은 기업에 의한 살인'
2. <기획>형사소송법 개정 이렇게 ② 영장 없는 강제처분
3. <알림> 「희망으로 그리는 세계 1·II」 배급
4. '반차 차별 포럼-형사사법절차와 차별' 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산재사망은 기업에 의한 살인"

지난해 노동자 산재사망 2,923명 ... 기업과 기업주에 책임 물어야

28일 '국제산재노동자 추모의 날'. 한국의 노동자들은 추모해야하는 노동자가 너무나 많다. 지난해 질병, 업무상 사고 등으로 인해 사망한 노동자가 2천923명, 하루평균 8명의 노동자가 죽어갔다. 게다가 산업재해자수는 9만4천924명에 이른다. 2002년 산재 사망자수와 비교해도 12.2%(318명)가 증가한 것이고, 산업재해자수는 15.9%인 1만3천13명이 늘었다. 최근 이 같은 통계(노동부 발표에 민주노총과 노동건강연대 등 노동사회단체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기업의 안전불감증과 더불어 노동강도 강화, 정부의 '규제완화'가 맞물려 많은 노동자들이 산재로 사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한해 3천명이나 되는 산재사망을 줄이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노동운동세상 등 6개 단체는 국제산재노동자 추모의 날을 맞아 발표한 논평에서 "산업재해는 생명보다 이윤을 우선하는 기업의 경영 활동의 결과물"이라며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은 기업에 의해 저질러진 살인"이라며 "기업과 기업주의 책임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무관심이나 부주의 등으로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기업과 기업주에게 무거운 처벌이 내려야, 기업주 스스로 산업재해를 예방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날 전국 8개 지역에서 근골격계-중대재해 대책 마련 촉구 결의대회를 진행한 민주노총 역시 산업재해 문제 해결로 '강력한 사업주 처벌'을 주장하고 있다. 민주노총 조태상 산업안전부장은 "불법행위로 노동자를 사망하게 만들어도 사업주는 구속되거나 처벌받지도 않고, 과태료 몇 백 만원 수준으로 끝난다"며 산업재해로 인한 노동자 사망이 줄어들지 않는 원인을 지적했다. 조 부장은 산업재해가 개별노동자만의 문제가 아닌 점을 강조하고, 산업재해를 해결하지 않는 상황에서 기업경쟁력이나 국가경쟁력은 말장난에 불과하다며 정부에게 대책을 촉구했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계와 사회단체에서는 기업과 기업주의 의무와 책임을 강화하는 법률 제정에 대한 논의가 일고 있다. 호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사업장사망과 중대상해 법(기업살인법)' 등을 통해 기업주와 기업에게 노동자의 건강과 노동안전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다. 질병이든 사업장에서 사고이든 '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재해'가 기업과 업주의 책임임을 분명히 하는 것이 산업재해의 예방에 우선적 과제를 일깨우고 있다.

<기사 처음으로>

<기획>형사소송법 개정 이렇게 ② 영장 없는 강제처분

남용되는 긴급체포, 지문날인, 긴급감청 ... 영장주의 원칙 지켜져야

지난해 12월 인권활동가 30명은 국회에서 '집시법 개악 반대' 등을 외치다 경찰에 연행되었다. 이들은 지문날인을 완강하게 거부하여 지문을 날인하지 않은 채 당일 밤에 모두 석방되었다. 이들이 주장한 것은 지문을 채취하기 위해서는 '신체검증영장'을 받아야 한다는 것. 개인의 중요한 정보가 들어있는 지문을 강제로 채취하는 것에 반대하는 것이다.

이처럼 국가권력의 자의적인 강제처분을 막기 위해 요구되는 것이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다.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법원 또는 수사기관이 구속·압수·수색·검증 등의 강제처분을 행할 때에는 법원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야 한다"는 영장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영장주의는 "강제처분이 사람의 신체나 의사(의사)의 자유 또는 물건에 대한 지배권에 제한을 가하게 되므로, 강제처분이 남용되어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법원이 먼저 강제처분의 실사여부를 판단하고 그 결과를 기재한 영장을 제시하도록 규정 한 것"으로 권리 보장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영장에는 처분의 대상, 시간 또는 장소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하고, 이른바 '일반영장(general warrant)'은 금지된다. 영장은 검찰의 신청에 의해서 법원이 발부하는 것이고, 아주 예외적인 상황이 아닌 바에는 영장 없는 강제처분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영장제도를 무색케 하는 긴급체포의 남용

이런 영장제도에는 예외가 있다. 체포할 때에는 당연히 체포영장이 필요하지만 수배 중인 피의자를 우연히 길거리에서 발견하였을 때와 같은 긴급성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 '긴급체포' 제도이다.

대한변협은 『2003년 인권보고서』를 통해 현행 긴급체포 제도가 남용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고 있다. 대한변협은 "수사단계에서 풀려나는 긴급체포 피의자의 비율은 2001년 37.6%에서 2002년 42.1%, 2003년 상반기 현재 44.7%(54,099명 중 24,187명)로 해마다 높아지고 있다. 또 전체 체포 피의자 중 상반기 구속영장 피의자가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긴급체포 피의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2001년 13.9%에서 2002년 15.5%, 2003년 상반기 16.8%(322,032명 중 54,099명)으로 계속 늘고 있다"고 밝혔다.

즉 긴급체포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피의자를 긴급체포로 일단 잡아들이고 있다는 것이다. 마치 이 대목은 1997년 형사소송법 개정 이전에 긴급구속 제도가 남용되고 있던 상황과 같은 양상으로 보인다.

이런 원인으로서는 검찰이 "1998년의 '지명수배 절차에 관한 예규'에서 '법정형이 징역 3년 이상에 해당하는 범죄 혐의로 지명수배된 기소중지자 등은 긴급체포할 수 있다'는 예외규정을 활용하도록" 한 것에 있다고 대한변협 보고서는 지적하고, 이로 인해 체포 영장제도가 유명무실해졌다고 비판한다.

지체없이 체포영장을 청구하도록

법무부 검찰개혁자문위원회와 대법원 산하의 사법개혁위원회는 이렇게 남용되는 긴급체포제도의 개선 방향으로 긴급성의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과 사후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양대 이은모 교수는 지난해에 발간된 『형사법 연구』 제19호에서 현행 긴급체포 제도는 형사소송법이 긴급체포에 대한 사후의 사법적 심사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긴급체포에 있어서는 긴급체포 후 지체없이 체포영장을 청구하도록 요구하여야 하며, 또한 이러한 절차를 포함해서 구속영장 발부까지의 기간을 48시간으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는 긴급체포 후 48시간 이내 구속영장을 청구하도록 되어있다.

긴급감청 요건 강화해야

'통신비밀보호법' 상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요청 과정에서도 영장주의의 원칙이 무시되고 있다. 지난해 검찰총장은 수사비밀 유출을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검찰 출입기자들의 통화내역을 무더기로 조회하여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통화내역 조회는 검사장의 승인만 얻으면 되고, 이 승인도 사후에 할 수 있는 허점이 있었다. 이처럼 통신비밀보호법 상의 긴급감청을 광범위하게 허용하고 있는 문제는 계속 지적되어 왔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 진보네트워킹센터 등 5개 인권사회단체들은 "긴급감청의 허용요건과 적용대상 범퍼, 기간의 엄격한 제한"과 함께 "통신사실확인자료 요청의 승인 절차를 보다 엄격히 해서 법원의 영장을 통해서 허가되도록" 하는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청원을 낸 바 있다.

영장 없이 촬영된 사진 등 증거능력 부인돼야

또 영장 없이 수사기관에 의해 임의로 촬영된 사진 내지는 비디오물을 증거로 쓸 수 있는냐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에 근거 규정조차 없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에서 지난해에 발간한 『한국사회의 개혁과 입법과제』에서는 이 문제를 형사소송법의 관계 규정을 신설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민변은 "개인의 용도에 관하여 사진 등의 영상이 더군다나 영장 등 요건을 갖추지 않고 촬영한 사진 내지 비디오를 수사의 자료로 삼는 것은 수사기관의 자의적·작위적 수사를 가능하게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인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불법적인 사진촬영 등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처럼 영장 없이 이뤄지는 강제처분은 우리 사회 곳곳에 널려 있다.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영장주의 원칙은 형사소송법 개정에서 실질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기사 처음으로>

<알림> 「희망으로 그리는 세계 I·II」 배급

그 동안 많은 어린이와 어른의 사랑을 받아 왔던 「희망으로 그리는 세계 I·II」가 새로운 2편의 이야기와 함께 다시 배급된다. '희망'은 '유엔 어린이·청소년 권리협약'을 기념하기 위해, 98년 유니세프와 캐나다 국립영화제작소가 만든 단편애니메이션 모음집으로 전 세계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대사 없이 그림과 아름다운 음악으로 구성되어 있다.

「희망 I·II」에는 모두 14편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 새로 추가된 <세상 밖으로>는 커다란 그림책을 손에 든 아이가 기차여행을 하면서 시작된다. '연필과 공책이 없어서 땅바닥에 글을 쓰는 아이들', '길거리에서 잠을 자는 아이들', '돌보는 부모님이 안 계신 아이들' 등을 만난 주인공은 그림책을 통해서 희망을 만든다. 연필과 공책을 그리면 금새 연필과 공책이 되고, 침대를 그리면 집 없는 아이들의 쉼터가 되는 그림책. 이 그림책은 바로 '아이들의 권리'를 말하고 있다. 추가된 다른 한 편은 <전쟁은 싫어요>이다. 소년병이 되어 전쟁터로 끌려간 한 소년이 전쟁의 참혹함을 깨달으면서 자신이 살았던 평온한 마을을 그리워하는 안타까운 이야기이다.

연령에 관계없이 볼 수 있는 「희망 I·II」는 인권의 감수성을 일깨우는 좋은 인권교재로 활용할 수 있다.

- ▷ 가격 20,000원(우편료 별도)
- ▷ 문의 : 인권운동사랑방 02-741-5363

<기사 처음으로>

"반反 차별 포럼-형사사법절차와 차별" 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1부. 총론 발제: 이상희 변호사
차별의 관점에서 바라본 형사사법절차 : 사례와 정부정책의 한계를 중심으로
- 2부. 모듈 활동: 성소수자/ 이주노동자/ 장애인을 위한 수사·재판지침 만들어 보기
- 3부. 각론 발제와 토론
성소수자와 형사사법절차/ 이주노동자와 형사사법절차/ 장애인과 형사사법절차

- ▷ 때: 5월 6일(목) 오후 5:30
- ▷ 곳: 노동사목회관 3층 강당
- ▷ 문의: 국제민주연대 (02-3675-5808) 다산인권센터 (031-213-2105)

<기사 처음으로>

제보 및 의견 | 어제의 인권하루소식 | 인권하루소식 검색

위로



인권교육 | 인권정보자료 | 인권하루소식 | 인권기획활동 | 인권영화제 | 감옥인권 | 인권운동연구소

인권하루소식

일간(2면발행, 일·월요일 제외)

창간 1993년 9월 7일

인권하루소식

2004년 04월 30일 (금)
제 2563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김영원 김정아

TEL 02-741-5363 | FAX 02-741-5364
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오 의 하루소식
하 소식 자세히 찾기
하루소식 주제별 찾기
만화 사랑방

<오늘의 기사 제목>

1. 강화되는 노동강도, 죽어가는 노동자
2. 클릭! 인권정보자료 - 「박기범 이라크통신 활동모음집」
3. <기획> 직접민주주의의 씨앗 (글) 국민소환제

강화되는 노동강도, 죽어가는 노동자

한국타이어 노동자, 기계에 머리 끼어 사망

대전의 한 공장에서 노동자가 기계에 압착, 사망하는 사고 발생해 안타까움과 함께 산업재해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다.

지난 28일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에서 소병섭(40)씨가 기계에 머리가 끼어 사망했다. 소 씨는 검사공정에 해당하는 유니포미터머신이라는 발란스기계를 조작하던 중 머리가 압착되면서 두개골이 함몰되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입사 12년차였던 소 씨는 숙련공이었고, 기계는 사용연수 10년차의 타이어 발란스를 맞추는 기계로 돌발 상황 시 자동으로 멈추게 되어 있으나,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동당 대전시지부와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 등은 29일 오전 대전지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 씨 사망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대책마련, 특별근로감독 실시를 촉구했다. 이들은 이번 사고의 주요원인이 무리한 감원으로 인한 과도한 작업량 증가와 경영혁신을 명분으로 한 TPM제도 실시 등 높은 노동강도라고 주장했다. TPM(전원참여생산보전)제도는 노동자들로 하여금 정규업무시간외 작업을 강요하는 효과를 발휘한다.

이에 대해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생산지원팀 박용삼 과장은 "노동강도증가 때문이라는 것은 민주노총에서 하는 말로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종합적으로 경찰에서 조사하고 있고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장 노동자들의 이야기는 산재의 가장 큰 원인이 노동강도 강화와 생산량에 대한 압박감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한다. 근속년수 9년차의 아무개 씨는 "전에는 2명이 함께 작업하던 기계를 회사에서 1명만 작업토록 하면서 동일한 생산량을 요구한다"며 "청소할 때 기계를 세워야하지만, 회사는 생산량을 강요하고 노동자가 이에 따른 압박을 받기 때문에 세우지 않고 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 노동자는 또한 "인원을 늘리지 않은 상태에서 3반3교대에서 4반3교대로 전환해 365일 공장이 돌아가는 대가로 노동강도가 강화되었다"고 말한다.

98년 한국타이어에서 해고당한 박희태 씨는 "89년 9월 사망사고 이후에 파로사 5명 등 노동강도 강화로 매년 산재가 증가하고 있다"며 "현장 노동자의 말을 들어보면 하루가 멀다하고 크고 작은 산업재해가 일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사측이 내놓고 있는 산재예방을 위한 대표적인 대책은 '일정한 기간동안 산재가 발생하지 않은 부서 전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것이 오히려 산재를 은폐하는 작용을 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노동자는 "부서에서 산재가 발생하면 6-7명 정도의 부서원들이 인센티브를 못 받기 때문에 동료의 아픔보다는 오히려 산재 당한 동료를 미워하게 된다"며 "이로 인해 부상을 산재로 처리할지 갈등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자본의 악랄한 노동강도 강화가 결국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현실이다.

<기사 처음으로>

클릭! 인권정보자료 - 「박기범 이라크통신 활동모음집」

찾아든 평화의 열망에 풀무질을!

퍼낸인: 바끼통(박기범이라크통신)/ 335쪽/ 2004년 4월

많은 이들의 관심이 17대 국회의 출발과 통천역 참사에 쏠려있는 사이, 공포에 질린 이라크 어린이들의 비명과 아이를 잃고 뉘를 놓은 어머니들의 비탄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예정대로 파병"을 고집하고 있고, 28일 미 정부는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이라크 재건사업 설명회를 열어 친절하게도 '피 묻은 폭리'를 취하는 법을 알려주기까지 했다. 이러한 때 지난 한해 이 땅과 이라크에 평화의 숨결을 한껏 불어넣은 '바끼통'(http://cafe.daum.net/gibumiraq)의 활동모음집이 발간돼 더 없이 반갑다.

바끼통은 지난해 2월 전쟁을 앞둔 이라크로 날아가 공포와 불안 아래 놓인 아이들과 함께하고자 했던 동화작가 박기범의 반전평화활동을 지지하기 위해 처음 모였다. 바끼통의 활동은 박 씨의 활동을 알리는 데서 그치지 않았다. 아이들과 함께 평화를 이야기하고, 피켓을 들고 반전평화행진을 벌이고, 겨울 칼바람 속에서도 시민단체를 이여가며 파병반대 '소망의 나무'를 함께 키웠다. 이 자료집은 지난 한해 바끼통이 통신과 거리에서 세상 사람들과 나누고자 했던 평화의 마음과 활동들이 무엇이었는가를 잘 보여준다.

바끼통은 "지난해는 추억이 아니라 현재이며 앞으로의 미래"이기 때문에 이 자료집을 펴냈다고 말한다. 바끼통의 말처럼 이 자료집을 넘기다 보면 이라크에 폭탄이 떨어졌을 때의 충격, 파병 동의안이 통과되던 날 국회 앞에서의 처절했던 외침, 아이들과 시민들의 힘으로 무너져 무너져 사라졌던 파병반대 '소망의 나무'가 하나둘씩 되살아난다. 추가 파병을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는, 먼저 간 군대도 돌아오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목소리가 다시 가슴을 친다.

<기사 처음으로>

<기획> 직접민주주의의 씨앗 (끝) 국민소환제

대표자 선출과 소환의 권리는 동전의 양면

몇 년에 한번씩 돌아오는 선거. 국민들의 '소중한 표'를 통해 선출된 대표자들은 몇 년 동안 국민들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자신의 직위를 유지한다. 그들이 아무리 민의에 반하는 행동을 해도 국민들은 그들을 선출했던 것과 같이 그들을 끌어내릴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국민소환제 도입은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일 수밖에 없다.

대의제의 실체를 보여 준 부안

7만의 군민 중 수천 수만 명이 200여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촛불집회에 참여했다. 지난해 7월 이후 관련 구속자 38명, 불구속자 85명, 불입건자 95명, 중상자가 400여명(2004년 2월 10일 집계)이었고, 마을 이장의 70%가 총사퇴하였다. 그다지 크지 않은 지역에서 일어난 '일대 사건'이 아닐 수 없다. 정부와 일부 자치단체장을 중심으로 부안에 핵폐기장을 건설하려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다. 결국 2월 14일 주민투표를 통해서 72.04%의 투표율에 91.83%의 압도적인 반대로 주민들은 자신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군민의 손으로 직접 선출한 군수와 도지사는 군민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핵폐기장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었다. 이에 부안 군민들은 군수소환을 위한 서명운동을 진행해 2만3천여명(유권자 5만2천여명)의 군민이 서명을 하였고, 군수 퇴진을 위한 시위와 불복종운동을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다. 현재 군수와 도지사는 여전히 군민들을 대상으로 핵폐기장 유치를 설득하고 있는 중이라고 핵폐기장백지화핵추방범부안군대책위 관계자는 전한다. 이것이 현재 우리가 '신봉'하고 있는 대의제 민주주의의 한 모습이다.

주민발의로 주민소환조례 쟁취

한편 광주광역시에서는 '주민발의에 의한 주민소환조례'가 제정되어 직접 민주주의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주민소환조례제정운동에 앞장서온 광주시민단체협의회(아래 광주시민협)는 "2004년 2월까지 광주전남지역 자치단체장 29명 중 10명이 각종 비리로 그 직위를 상실했거나 사법처리 과정을 밟고 있다"고 밝혔다. 광주시장은 뇌물수수 혐의가 인정돼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추징금 3천만원의 형을 받았고 현재 항소중이다. 이에 광주시민협은 '시장이나 시의원의 위법·부당한 행위, 직권 남용, 직무유기에 대해 소환을 요구할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광주 시민협은 지난해 9월부터 6개월여 동안 서명운동을 진행한 결과 1만9천여 명을 주민소환조례제정 청구인으로 등록했다. 이어 2월 23일에는 '광주광역시공직자소환에 관한 조례안'을 시에 제출했고, 지난 29일 시의회 본회의를 거쳐 조례안 제정이 확정되었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장과 시의원을 소환 대상으로 하여 전체 선거인의 일정수(시장은 유권자의 10%, 시의원은 20%)가 연서해 소환을 결정하면 소환여부를 묻는 주민투표를 실시하게 된다. 투표 결과 투표자의 과반수가 소환에 찬성하면 소환 대상자는 직위를 잃는다. 소환선거는 소환 요구가 성립된 60일 후 80일 전에 실시해야 하며, 소환선거와 함께 후임자 선출을 위한 보궐선거를 동시에 치르도록 하였다. 단, 취임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았거나 잔여 임기가 6개월 미만, 또는 소환선거 후 6개월 이내에는 소환 요구를 할 수 없다.

소환조례 제정에 대해 반발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소환제와 관련한 상위법이 없고, 소

환조례가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와 퇴직사유'에 대해 규정한 현행 지방자치법과 상충된다는 근거로 시 관계자 일부가 반발하며 나선 것. 이에 광주시민협은 "주민소환제는 지방분권특별법 14조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투표제도, 주민소환제도, 주민소송제도의 도입방안을 강구하는 등 주민직접참여제도를 강화하여야 한다'는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며 반박했고, 그 결과 소환조례는 광주시민들의 의사에 따라 제정되었다.

소환사유의 기준은 헌법이 돼야

주민소환제정운동이 광주뿐만 아니라 전라남도, 구리 등 곳곳에서 진행중이지만, 국민소환제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열린우리당이 17대 국회 개원시 우선처리 47개 법안 중 하나로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을 지정하였고 민주노동당 역시 국민소환제도 입법을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인권운동사랑방의 '국민발의제·국민소환제에 대한 질의서'에 열린우리당이 "위법·부당한 행위나 직권남용을 한 선출직 공직자에 대해 국민소환제도를 도입할 것"이라 밝히고 "이러크 파병이나 한-칠레 FTA 문제 등 정치적 결정에 대해서는 헌법소원 등 다른 방법으로 그 정당성을 묻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답함으로써 국민의 의사에 반하거나 헌법 정신에 위배된 정책을 결정한 대표자에 대해서는 소환할 수 없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 정책에 따르면 부안군민들은 자신들의 의사에 반하는 군수를 여전히 자신들의 힘으로 소환할 수 없게 된다.

이와 관련, 일본 마끼정의 상황은 고무적이다. 오마이뉴스(2004년 2월 9일자)에 따르면, 일본 중앙정부의 마끼정 원전 건설 계획에 주민들은 자발적으로 '자주관리 주민투표' 운동을 벌였다. 당시 일본에도 주민투표와 관련한 조례가 없었지만 95년 1월 실시된 주민투표에서 주민의 95%가 반대를 표명하였고 이후 단체장에 대한 소환운동이 벌어져 결국 정장은 사임했다. 이후 '마끼 원전 주민투표 실행모임'의 대표가 정장에 당선되었고 주민투표 조례안이 만들어져 96년 주민투표 실시 결과 60%가 넘는 반대로 원전 계획을 철회시켰다.

헌법 1조는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헌법정신에 기초하여 국민의 뜻과 의사를 무시한 권력은 국민소환제 도입을 통해 철회되어야 한다. '더 많은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는 국민소환제 도입을 통해 국민이 '주권자'로 다시 설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사 처음으로>

제보 및 의견 | 어제의 인권하루소식 | 인권하루소식 검색

위로